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차 례

I. 결산 개요(일반회계) 1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3
3. 세출결산	4
4. 재무결산	7
5.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10

II. 검토의견 14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
나. 세입예산안 과다 계상 및 수납률 저조 개선 필요	14
2. 기타잡수입(69-691)	1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
나. 정보공개수수료의 연내 세입조치 미흡	18

《세 출》

3. 인건비(1001-150)	2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1
나. 헌법연구관(보)의 자격요건별 임용 편중 해소 필요	22
다. 헌법연구관 등의 외부강의 신고 등록 관리 철저 필요	25
4. 본부기본경비(1011-250)	2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9
나. 분산 편성된 차량 임차료 예산의 일원화 필요	30
5. 국선대리인보수등(1031-300)	3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3
나.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의 활성화 필요	34
다.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필요	39

6.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4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3
나. 장기 미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44
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감소 방안 마련 필요	50
7. 본부운영지원(1032-302)	5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2
나. 사이버어학교육 등 수요 관리 대책 마련 필요	53
8.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5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7
나.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실적 저조 및 전면 재검토 필요	58
다.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필요	63
9. 해외연수(1034-304)	6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7
나. 장기해외연수 학자금의 초과집행 지양 필요	68
10. 국제교류(1034-305)	7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1
나. AACC 사무실 관리비 연례적 세목조정 지양 필요	72
11. 재판자료확충(1035-306)	7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6
나.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의 집행 문제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78
12. 헌법재판정보화(1035-500)	8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0
나.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 및 안내·홍보 강화 필요	81
13.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운영 관련	84
가.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운영 관련 결산 개요	84
나.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의 적절성 확보 필요	85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92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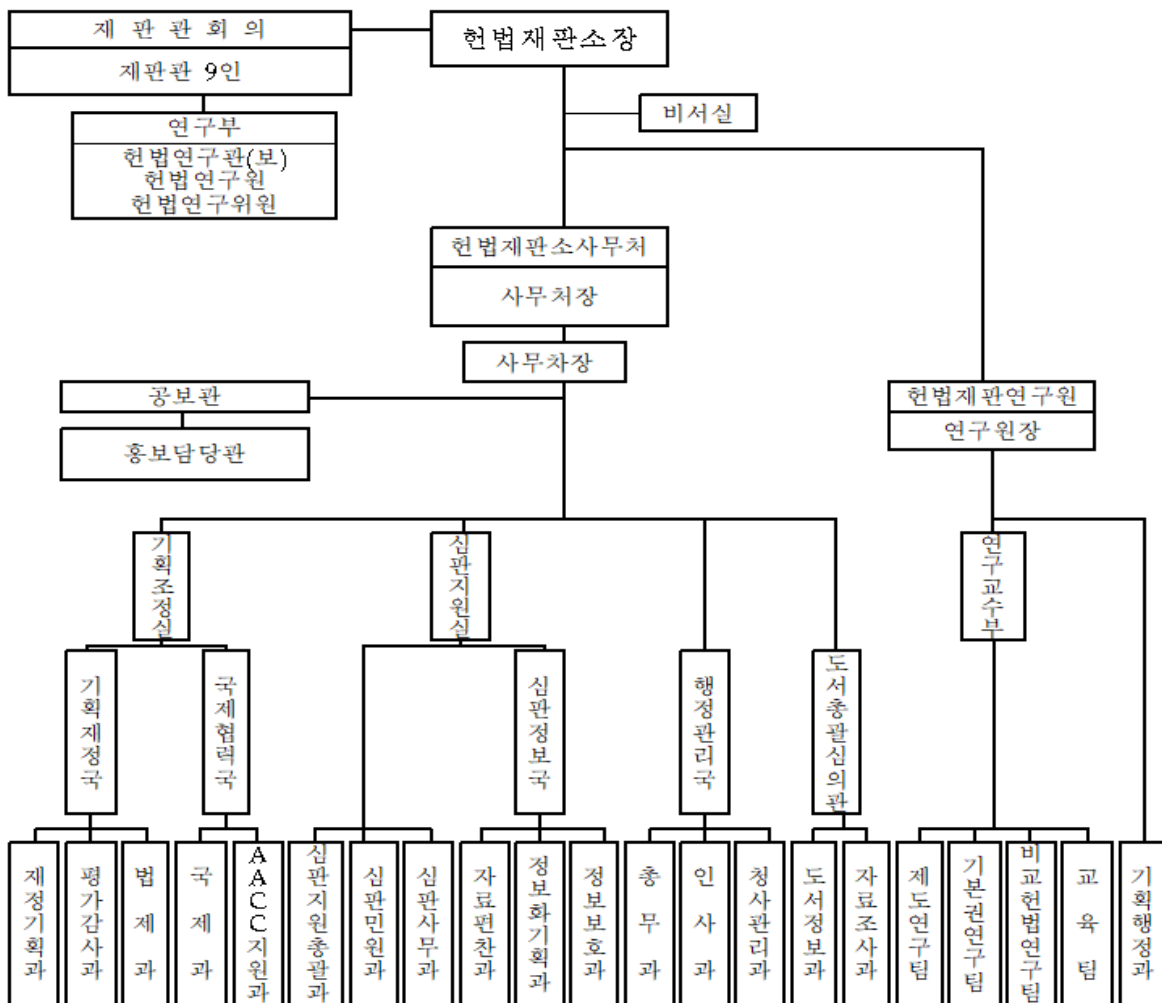
I . 결산 개요(일반회계)

1. 조직 및 정원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및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3개)로 이루어진 재판부와 연구부, 헌법재판소사무처(2실·4국·1관·1심의관·1담당관·16과) 및 헌법재판연구원(1부·4팀·1과)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 정원은 총 356명이며, 현원은 총 344명임.

< 헌법재판소의 조직도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헌법재판소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특정직 · 일반직	별정직	일반직
합계	정원	356	11	68	12	2	263
	현원	344	11	69	7	1	256
본부	정원	318	11	68	2	2	235
	현원	313	11	69	2	1	230
소속	정원	38	—	—	10	—	28
	현원	31	—	—	5	—	26

주: 현원의 경우 별도 정원(6개월 이상 휴직, 파견 및 교육훈련자 등) 제외
 자료: 헌법재판소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	C/B (%)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44	306	306	125.6	100.0	0	0

자료: 헌법재판소

-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 4,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6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전년 6억 8,000만원¹⁾ 대비 55%가 감소한 3억 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됨.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관사 임차보증금 2억원과 과지금액 반납 등 7,400만원, 면허료및수수료는 직원채용 응시료 500만원, 기타잡수입은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등 2,8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A)	결산(B)	B/A(%)	
기타경상이전수입	5	648	210	274	130.3	210
면허료및수수료	5	6	10	5	45.3	10
기타잡수입	26	25	24	28	118.3	25
총 계	36	680	244	306	125.6	245

자료: 헌법재판소

1) 2024년도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648백만원, 면허료및수수료는 6백만원, 기타잡수입은 25백만원임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금 사용액	전용 증(△)감액				
58,424	—	—	—	58,424	56,676 (97.0%)	—	1,748 (3.0%)

자료: 헌법재판소

-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84억 2,4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0%인 566억 7,6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0%인 17억 4,800만원임.
- 지출액 566억 7,600만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338억 9,300만원
기본경비로	70억 1,400만원
재판활동지원사업으로	7억 8,000만원
본부운영지원사업으로	40억 6,3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사업으로	18억 5,300만원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10억 6,100만원
정보자료운영사업으로	80억 1,200만원

각각 지출되었는바, 인건비와 물건비가 526억 3,500만원²⁾으로 전체 지출액 중 92.9%를 차지하고 있음.

2) 성질별 세출실적: 인건비 360억 3,100만원, 물건비 166억 400만원, 이전지출 4억 2,500만원, 자산취득 36억 1,600만원(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보고서, p. 13)

□ 불용액 17억 4,800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휴직 및 퇴직과 신규채용 시차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억 1,600만원,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물건비 6억 1,600만원, 이전지출 5,200만원,
유형자산 등 자산취득비 1억 3,900만원, 예비금 2,500만원이 각각 불용됨.

<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B/A (%)	
			본예산	추경(A)			
총 계	53,752	54,418	58,424	58,424	56,676	97.0	62,109
1000 헌법재판소운영	53,752	54,418	58,424	58,424	56,676	97.0	62,109
1001 인건비	30,995	32,202	34,692	34,692	33,893	97.7	35,353
인건비 (1001-150)	30,995	32,202	34,692	34,692	33,893	97.7	35,353
1011 기본경비	6,686	7,109	7,381	7,381	7,014	95.0	7,710
본부기본경비 (1011-250)	6,270	6,697	6,955	6,955	6,603	94.9	7,274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 (1011-251)	416	412	426	426	411	96.5	436
1031 재판활동지원	703	849	798	798	780	97.7	718
국선대리인보수등 (1031-300)	119	111	127	127	126	99.4	121
재판활동운영지원 (1031-301)	584	738	671	671	654	97.4	597
1032 본부운영지원	3,587	4,221	4,292	4,292	4,063	94.7	4,033
본부운영지원 (1032-302)	3,587	4,221	4,292	4,292	4,063	94.7	4,033
1033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37	1,864	1,865	1,865	1,853	99.3	1,856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033-303)	1,837	1,864	1,865	1,865	1,853	99.3	1,856
1034 국제교류협력	1,081	1,011	1,179	1,179	1,061	90.0	1,159
해외연수 (1034-304)	580	494	565	565	486	86.0	604
국제교류 (1034-305)	501	517	614	614	576	93.7	555
1035 정보자료운영	8,862	7,162	8,192	8,192	8,012	97.8	11,255
재판자료확충 (1035-306)	402	460	386	386	362	93.7	340
헌법재판정보화 (1035-500)	8,163	6,310	7,499	7,499	7,345	97.9	8,424
전자도서관운영 (1035-501)	297	392	307	307	306	99.6	2,491
1036 예비금	—	—	25	25	—	—	25
헌법재판소예비금 (1036-307)	—	—	25	25	—	—	25

자료: 헌법재판소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A)	2024(B)	증 감(A-B)	
			금 액	비 율 (%)
자 산	214,212	213,911	301	0.1
부 채	3,880	3,749	131	3.5
순자산	210,332	210,162	170	0.1

자료: 헌법재판소

- 2025회계연도 말 헌법재판소 자산은 2,142억 1,2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대비 3억 100만원(0.1%) 증가함.
 - 유·무형자산이 5억 3백만원 증가하였고, 금융자산이 1억 9,600만원, 기타자산이 600만원 감소하였음.
- 2025회계연도 말 부채는 38억 8,0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대비 1억 3,100만원(3.5%) 증가함.
 - 차입부채가 1억 3,100만원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2,103억 3,2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대비 1억 7,000만원(0.1%) 증가함.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A)	2024(B)	증 감(A-B)	
			금 액	비 율 (%)
I. 프로그램순원가 ³⁾	61,934	59,216	2,719	4.6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⁴⁾	—	—	—	—
IV. 비배분수익 ⁵⁾	105	80	25	31.8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61,829	59,136	2,693	4.6
VI. 비교환수익 등 ⁶⁾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61,829	59,136	2,693	4.6

자료: 헌법재판소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618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9,300만원(4.6%)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 619억 3,400만원에서 지출금반납금 등의 비배분수익 1억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는 618억 2,900만원임.

3)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 '[1000] 헌법재판소운영'의 1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음.

4)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비용(자산재평가손실, 자산처분손실 등)을 말함.

5)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이자수익, 자산재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등)을 말함.

6)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등을 말함.

다.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A)	2024(B)	증 감(A-B)	
			금 액	비 율 (%)
I.기초순자산	210,162	210,299	△137	△0.1
II.재정운영결과	61,829	59,136	2,693	4.6
III.재원의조달및이전	61,999	58,999	3,000	5.1
IV.조정항목	—	—	—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10,332	210,162	170	0.1

자료: 헌법재판소

- 2025회계연도 말 기초순자산은 2,101억 6,2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618억 2,900만원임.

재원의조달및이전은 619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원(5.1%) 증가하였음.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금액을 합계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2,103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 7,000만원(0.1%) 증가함.

5.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 헌법재판소는 2025년도에 주요 정책목표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강화,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심판지원 역량 강화, 국민을 위한 재판·행정 서비스 제공,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설정하였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회계 13개의 세부사업 수행을 통하여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 업무의 효율적 지원, 대국민 재판서비스 제고, 해외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추진하였음.

-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584억 2,400만원 중 56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 4,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2025년 집행률은 97.0%임.

-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결산을 분석한 결과,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헌법재판소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은 최근 4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실제 응시인원이 예상치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2025년도 수납률이 45.3%로 크게 하락하였는바, 공무원 선호도 변화 등 시장의 추세와 과거 실적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타잡수입 중 정보공개수수료의 경우 수납된 세입의 당해 연도 세입 처리가 누락되어 법정 출납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한 다음 연도 3월에야 비로소 국고 수납이 완료되었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법정 출납기한

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세입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헌법연구관(보)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6명 중 97%(74명)가 판사·검사·변호사 등 실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자격요건별 임용 편중이 두드러지므로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국가기관 경력자 등의 채용을 확대하여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시 후 사례금 수령에 따른 신고 누락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복무 관리 철저 및 외부강의 신고 등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넷째, 본부기본경비 사업의 정무직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예산이 ‘본부기본경비’와 ‘본부운영지원’ 사업으로 분산 편성되어 있으므로 단일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에서 무자력 기준과 별도로 법률상 규정된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실적이 매년 1~3건으로 매우 저조하므로 구체적인 선임 기준을 마련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2025년도 참고인 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전액(1,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헌법재판 심리 시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중 접수 후 4년이 경과한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추세(2021년 41건→2025년 74건)에 있으므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사건의 각하 결정 비중(83%)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구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상담 제공을 강화하여 각하 사건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사이버어학교육 등’ 내역사업에서 정부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정원 제한 없이 신청자 전원을 지원함에 따라 전화외국어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타 사업(차량임차료)의 불용예정액을 세목조정하여 충당하였는바, 향후 복리후생 성격 사업 집행 시 분기별 선발 정원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자체 수요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 중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은 연례적인 실적 부진 및 예산 불용(2025년 집행률 36%), 장기 재위촉 관행, 제출 보고서의 질적 실익 부족 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존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사업의 경우 행사대행 용역과 필수 과업(자료집 제작, 초청장 발송) 예산이 타 세목으로 분산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므로 일반용역비 세목으로 재편성하여 일괄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해외연수 사업 중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학자금 예산이 국회 감액 편성 취지와 달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예산 부족을 초래하고 이를 타 내역사업(헌법연구원 연수)의 불용액으로 사후 충당하였는바,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열째, 국제교류 사업 중 AACC 연구사무국 관리비 부족을 이유로 연례적·반복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목조정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최근의 공과금 인상 추이를 정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소요 추계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열한째,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은 수록 결정 사건 수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상당 액수의 불용(2025년 불용률 52%)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집행성과 분석 및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열두째,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의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은 무상유지보수 종료 후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비 지출이 예상됨에도 실무 활용도(월평균 3.4건)가 저조하므로 내부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스템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열셋째,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중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청원심의회 등 국민 권익 관련 주요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헌법재판소 출신 인사(전 헌법연구관·연구원)로 위촉되어 있어 법령상 외부위원 도입 취지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II. 검토의견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면허료 및 수수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등을 세입 조치하는 항목으로, 2025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1,000만원 중 500만원⁷⁾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0	10	-	10	5	5	-	-	1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세입예산안 과다 계상 및 수납률 저조 개선 필요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미달하여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세입예산액은

7) 세부금액은 4,534,150원임.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실제 수납액은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53만 4,150원에 그쳐 결산상 수납률이 45.3%로 크게 하락하였음.

< 최근 4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예·결산 추이 >

(단위 : 원, %)

연도	예산액[A]	결산액[B]	수납률[B/A]
2022	9,000,000	5,112,400	56.8
2023	9,000,000	5,368,800	59.7
2024	9,000,000	6,282,880	69.8
2025	10,000,000	4,534,150	45.3

자료: 헌법재판소

- 동 사업의 응시수수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3조8)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가 응시원서 제출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로서, 직급에 따라 5급 이상은 1만원, 6·7급(전문경력관 포함)은 7천원, 8·9급은 5천원의 수입인지를 부착9)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8) 제73조(응시수수료)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7급 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9)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동조 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일부 면제 대상이 존재하나, 전체 세입 규모의 괴리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세입예산안과 실제 수납실적 간의 만성적인 격차는 헌법재판소가 예상하는 채용 응시인원과 실제 응시인원 간의 상당한 괴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최근 4년간 직급별 예상 응시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실적치나 공무원 선호도 변화 등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채 주요 직급의 예상 응시인원을 5급 이상 200명, 8·9급 600명 등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연도별·직급별 예상 응시자 수 및 실제 응시자 수 비교 >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예상	실제	예상	실제	예상	실제	예상	실제
5급 이상	200	124	200	66	200	168	200	58
6·7급 (전문경력관 포함)	500	338	500	251	500	426	700	148
8·9급	600	302	600	591	600	325	600	584

자료: 헌법재판소

- 더욱이 2025년의 경우 6·7급의 예상 응시인원을 전년 대비 오히려 증액(500명→700명)하여 계획하였으나 실제 응시인원은 148명에 불과하여 예측 오차가 심화되었고, 5급 이상 역시 실제 응시인원(58명)

이 예상치(200명)의 29% 수준에 그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의 지원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재정 환경의 변화를 세입 추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실제 수납 가능성 대비 세입예산을 매년 관례적으로 과다 계상하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 조달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최근의 전반적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수 감소 추세 및 최근의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납 예상액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적정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기타잡수입(69-69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잡수입은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수입, 정보공개 및 심판기록 복사 수수료¹⁰⁾(이하 “정보공개수수료”라 함) 등을 세입 조치하는 항목으로, 2025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고 2,8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4	24	—	24	28	28	—	—	25

자료: 헌법재판소

나. 정보공개수수료의 연내 세입조치 미흡

- 최근 4년간 헌법재판소의 정보공개수수료 세입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 회계연도 말(12월 26일~29일)에 부서 세입조치 요청 및 국고 수납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회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왔음.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공개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 서 부담하는 수수료

< 최근 4년간 정보공개수수료 세입 처리 현황 >

(단위 : 원)

연도	금액	세입과목	부서요청일자	수납일자
2022	723,190	잡수입	2022. 12. 28.	2022. 12. 29.
2023	624,390	잡수입	2023. 12. 26.	2023. 12. 27.
2024	379,650	잡수입	2024. 12. 26.	2024. 12. 26.
2025	830,570	잡수입	2026. 1. 16.	2026. 3. 19.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러나 2025년의 경우 수납된 정보공개수수료 총 83만 570원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세입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회계연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인 2026년 1월 16일에야 비로소 소관 부서의 세입조치 요청이 발생하였음.
- 징수 및 수납된 세입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신속히 납입되어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의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마땅함.
- 더욱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수시의 수입은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편입하여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출납을 완결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는 법정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한 2026년 3월 19일에 최종 국고 수납을 완료함으로써 예산 회계 관리의 엄격성을 저해하였음.

<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연도 말 담당자 교체에 따른 후임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2025년 정보공개수수료 수입의 연도 내 국고 납부가 누락되었으며, 누락 사실을 확인한 즉시 수입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이동 및 인적 과실 등의 사정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법정 출납기한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같은 국가 재정 관리의 핵심 제도가 단순한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소홀로 인해 저해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정보공개수수료 담당 부서의 업무 인수인계를 강화하고, 세입 총괄부서의 부서별 세입조치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헌법재판소 전체 세입 흐름에서 이와 같은 누락 및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인건비(1001-1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346억 9,200만원 중 338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	34,692	34,692	—	34,692	33,893	799	35,353
보수(110-01)	32,793	32,793	—	32,793	32,018	775	33,347
기타직보수(110-02)	1,661	1,661	—	1,661	1,659	2	1,755
연가보상비(110-05)	238	238	—	238	217	22	25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연구관(보)의 자격요건별 임용 편중 해소 필요

- 헌법연구관(보)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2025년 12월 말 기준 74명이 헌법재판소 연구부와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연도별 헌법연구관(보) 정·현원 현황 >

(단위: 명)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정원	66	67	69	72	76	78
현원	59	57	59	62	70	74
파견	2	2	2	2	2	2
휴직	2	4	6	5	5	7
국외연수	1	1	2	4	3	2

자료: 헌법재판소

< 연도별 헌법연구관(보) 정·현원 세부 현황 >

(단위: 명)

	2020				2021				2022			
	헌법연구관		파견 법관	파견 검사	헌법연구관		파견 법관	파견 검사	헌법연구관		파견 법관	파견 검사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헌법재판소 연구부	57	54	9	4	58	52	9	4	60	54	9	4
헌법재판연구원	9	5	—	—	9	5	—	—	9	5	—	—
	2023				2024				2025			
	헌법연구관		파견 법관	파견 검사	헌법연구관		파견 법관	파견 검사	헌법연구관		파견 법관	파견 검사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헌법재판소 연구부	63	57	9	4	66	64	9	4	68	69	9	3
헌법재판연구원	9	5	—	—	10	6	—	—	10	5	—	—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헌법연구관(보)으로 채용하고 있는바, 헌법연구관(보)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에서 정한 5개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	
제1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2호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제3호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4호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5호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그런데 2025년 12월 말 기준 헌법연구관(보)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총 76명 중 74명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2명이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이 97%이고, 비법조인(박사)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헌법연구관(보)에는 실무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 외에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종사 경력에 있는 자 및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법률 사무종사경력자로 충원이 될 수 있음에도, 실제 헌법연구관(보)의 임용은 실무 법조인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살펴볼 수 있음.

< 헌법연구관(보) 자격요건에 따른 임용 구분 현황 >

자격요건별 구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헌법연구관(보)	74명 (97%)	—	—	2명 (3%)	—	76명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은 통상의 민·형사재판과 비교할 때 규범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을 원칙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각 법률 분야의 심층적 이론과 원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법리의 적용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실무 법조 자격자에 치중된 헌법연구관(보)의 임용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국가기관 경력자 등의 채용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다양한 시각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 인적 구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헌법연구관 등의 외부강의 신고 등록 관리 철저 필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등¹¹⁾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함)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¹²⁾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제1항),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대하여는 신고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제2항).
-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시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4년 103건을 기록하였다가, 2025년 77건을 기록하여 증가추세에 있음.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2) 일반 공직자 등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제외)상한액: 1시간당 40만원
각급 학교의 장, 교직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상한액: 1시간당 100만원

- 2025년도 외부강의 신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연구관 등이 연간 최대 7건을 신고한 사례와 신고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65.3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공무원 외부강의 실시 내역 >

(단위: 건)

연도	외부강의 신고건수			연구부 소속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합계 ¹⁾	강의요청 공문		신고 건수	헌법 연구관	헌법 연구원	법제 연구관	신고 건수	헌법 연구관	헌법 연구원	책임 연구관 등 ²⁾
		유	무								
2021	30	30	—	13	9	3	1	15	—	—	15
2022	38	38	—	10	9	1	—	22	—	—	22
2023	49	49	—	16	10	6	—	28	2	1	25
2024	103	103	—	32	25	7	—	57	4	3	50
2025	77	77	—	16	12	4	—	50	5	3	42

1) 재판부, 사무처 포함

2)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연구팀장, 교육팀 교수 등 포함)

자료: 헌법재판소

< 2025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건수(1인 기준)		대가(1인 기준, 천원)	
	최소 ¹⁾	최대	최소 ¹⁾	최대
정무직	1	2	300	653
헌법연구관	1	2	100	600
헌법연구위원	3	3	150	300
헌법연구원	1	2	100	400
책임연구관 등 ²⁾	1	7	100	500
사무처 일반직	1	1	200	553

1)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2)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연구팀장, 교육팀 교수 등 포함)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책임연구원 등(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연구팀장, 교수 등)의 외부강의 실시 및 그에 따른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연구원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원외교육 실시 건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2개 과정에 대하여 62회, 2,8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에는 30개 과정에 대하여 91회, 7,4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특히 원외교육의 증가(21년 21회, 1,581명 → 25년 46회, 5,422명)가 두드러짐.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실적 현황 >

(단위: 회,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과정수	22	24	24	26	30
실시횟수	62	64	63	68	91
교육대상	2,829	2,054	3,359	2,853	7,460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연구원 원외교육 실적 현황 >

(단위: 회,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시횟수	21	21	20	24	46
교육대상	1,581	859	1,245	1,165	5,422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은 원외교육 실시의 증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바,

2025년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 실시한 외부 강의 중 교육 실시 후 사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 외부강의 신고 미이행 사례 >

교육일시	교육실시 기관	교육시간	소속	강사료	외부강의 신고내역
2025. 5. 12. 10:00~12:00	대한변호사협회	120분	헌법재판연구원	60만원	—
2025. 5. 12. 14:00~16:00		120분		60만원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은 향후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 등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관련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본부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기본경비 사업은 헌법재판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운영경비로, 2025년 예산액 69억 5,500만원 중 66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기본경비	6,955	6,955	60 △60	6,955	6,603	—	352	7,274
인건비	830	830	—	830	736	—	93	899
운영비	3,248	3,248	60 △60	3,248	3,098	—	150	3,221
여비	177	177	—	177	162	—	16	205
업무추진비	600	600	—	600	600	—	0	618
직무수행경비	1,785	1,785	—	1,785	1,718	—	67	1,771
보전금	2	2	—	2	1	—	1	2
민간이전	177	177	—	177	152	—	25	193
유형자산	135	135	—	135	135	—	0	165
무형자산	—	—	—	—	—	—	—	2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분산 편성된 차량 임차료 예산의 일원화 필요

- 2025년도 헌법재판소의 차량 임차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재판관 및 사무처장 전용차량, 기타 업무용차량 등 총 12대에 소요되는 임차료는 ‘본부기본경비’ 세부사업에 2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2,200만원이 집행된 반면, 사무차장 전용차량 및 경호용 차량, 기타 업무용차량 등 총 6대에 소요되는 임차료는 주요사업비인 ‘본부운영지원’ 세부사업에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2,2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정무직 전용차량 및 일반 업무용차량 임차료 예산이 두 개의 세부사업¹³⁾에서 분산 집행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차량 임차료 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용도	수량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기본경비 (1011)	본부기본경비 (250)	재판관 및 사무처장, 기타 업무용	12대	248	248	222	26
본부운영지원 (1032)	본부운영지원 (302)	사무차장, 경호용 및 기타 업무용	6대	126	122	122	—
계			18대	374	370	344	26

자료: 헌법재판소

13) 각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사업목적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본부운영지원	차량 임차, 홍보(공보)활동, 정책연구용역,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청사보안장비 확충,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도서관 운영 및 관리 등 헌법재판소 본부운영에 필요한 경비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차량 임차료를 본부기본경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기본경비의 경우 재정당국의 예산안 편성 방침상 총액 한도 내에서 관리됨에 따라 주요사업비(본부운영지원)에 포함된 차량 임차료 예산을 본부기본경비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의 임차비용이라는 동일· 유사한 성격의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정당국의 편성 한도 관리 편의를 이유로 ‘본부기본경비’와 ‘본부운영지원’의 서로 다른 두 세부 사업으로 분산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관 전체의 차량 유지·임차 소요 총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산 구조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2025회계연도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기본경비	6,955	6,955	—	6,955	6,603	—	352	7,274
임차료	324	324	—	324	293	—	31	382
본부운영지원	4,292	4,292	—	4,292	4,063	—	229	4,033
차량 임차	126	126	△4	122	122	—	0	126

자료: 헌법재판소

- 더욱이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양 사업 모두 행정관리국에서 동일하게 예산을 관리·집행하고 있어 사업 간 분리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적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의 분산 편성 방식은 통일적인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로 보임.

< 2025회계연도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 임차료 예·결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부 서		예산내역		집행 금액	집행 세부내역
		편성 금액	산출근거		
본부 기본 경비	행정 관리 국	7	•체육행사버스 임차료	—	•탄핵사건으로 인한 미집행
		248	•정무직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222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집행
		25	•청사 환경조성 비품 임차료	23	•임차 미술품 계약
		44	•관사 임차료	44	•재판관 관사 임차료 지급
	공보 관실	—	—	3	•탄핵기간 브리핑룸 추가 사무용 가구 임차
	합계	324		293	
본부 운영 지원	행정 관리 국	126	•정무직 전용차량 임차료 •업무용 차량 임차료	122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집행
		6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버스 및 장소)	6	•연구교수부 버스 임차 •심판정보국 버스 임차 •행정관리국 버스 임차 •연구부 버스 및 장소 임차
	합계	132		128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차량 임차료 예산 집행의 일관성·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고, 동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단일한 세 부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국선대리인보수등(10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억 2,7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선대리인보수등	127	127	—	127	126	—	1	121
국선대리인보수	109	109	—	109	126	—	△17	109
참고인 연구비 등	18	18	—	18	—	—	18	12

자료: 헌법재판소

나.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의 활성화 필요

-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제도¹⁴⁾ 하에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사업 추진의 목적이 있음.
- 동 사업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¹⁵⁾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선임기준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선정결정 사실을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수행한 이후 재판부가 종국 결정을 하면 국선대리인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 국선대리인 보수 등 사업 집행 절차 >

추진절차	시행주체	관련규정
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신청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② 국선대리인 선정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2항, 제3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2조, 제3조
↓		
③ 청구서 등 제출	국선대리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5항
↓		
④ 선 고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1항
↓		
⑤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6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9조 -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4조 - 국선대리인 보수지급에 관한 재판관회의 의결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률 현황을 살펴보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건수는 2021년 1,096건, 2022년 1,003건, 2023년 884건, 2024년 1,057건, 2025년 1,068건으로 해마다 약 1,000여 건 이상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2021년 157건, 2022년 152건, 2023년 105건, 2024년 127건, 2025년 100건으로 심판청구 부적법으로 인한 기각·각하건수를 제외한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약 9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률 현황 >

(단위: 천원, 건, %)

연도	신청			계 A+B+C (A+C)	결정건수				취하	미제	선임률 (선임/결정건수)
	계	이월	금년		선임 A	소계 B+C	기각·각하				
							청구부적법 B	청구부적법 외 C			
2021	1,096	66	1,030	999 (175)	157	842	824	18	10	87	90 (16)
2022	1,003	87	916	934 (165)	152	782	769	13	19	50	92 (16)
2023	884	50	834	816 (114)	105	711	702	9	12	56	92 (13)
2024	1,057	56	1,001	997 (135)	127	870	862	8	10	50	94 (13)
2025	1,068	50	1,018	993 (107)	100	893	886	7	4	71	93 (10)

※ 선임률 $\{A/(A+C)\}$: 선임건수 ÷ (결정건수 - 심판청구 부적법으로 인한 기각·각하 건수) × 100

자료: 헌법재판소

□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 선임신청을 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은 무자격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2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2021년, 2022년 및 2024년은 매해 1건, 2023년은 2건, 2025년은 3건에 불과하여 공익 목적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

(단위: 건)

구분	신청	직권	계
2021	1	—	1
2022	—	1	1
2023	1	1	2
2024	—	1	1
2025	2	1	3

※ 신청: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 중 재판부에서 공익 목적으로 국선 선정

직권: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헌사)이 없었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익 목적 국선 선정

자료: 헌법재판소

□ 이렇듯 「헌법재판소법」에 공익 목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동 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이유는 ‘공익의 필요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동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이 요인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준은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16)에

16)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2006. 5. 2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②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 ‘공익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의 목적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 제도 하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법률상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공익 목적 국선변호인제도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공익상 목적 유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동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를 제고 필요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에서 보다 심도 있는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변론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법적 쟁점 및 실체적 진실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¹⁷⁾, 제37조¹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13조¹⁹⁾ 및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²⁰⁾에 근거하여 운영 중임.
-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고인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참고인 지정 결정을 하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이 변론에서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참고인 연구비를 헌법재판소가 지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17)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8) 「헌법재판소법」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9)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3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헌법재판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학회나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집행 절차 >

추진절차	시행주체	관련규정
① 참고인 추천요청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② 참고인 지정결정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③ 의견서 제출(서면) 및 진술(변론) ↓	참고인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④ 참고인연구비 지급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 헌법재판소 증인 등의 일당과 참고인에 대한 연구비 지급기준에 관한 재판관회의 의결 제3호

자료: 헌법재판소

- 최근 5년간 헌법재판 사건의 유형별 변론 및 참고인 의견청취 내역을 살펴보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지정 누적 건수가 8건(제68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사건 5건,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심판 사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지정은 4건,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지정은 3건이 이루어졌음.

< 최근 5년간 사건 유형별 변론 및 참고인 의견청취 내역 >

(단위: 건)

연도	구분	위헌법률 (헌가)	탄핵 (헌나)	권한쟁의 (헌다)	제68조제1항 헌법소원(헌마)	제68조제2항 헌법소원(헌바)
2021	변론 건수	1	3	3	－	1
	참고인 지정 사건 수 (참고인 수)	1(2)	－	1(2)	－	－
2022	변론 건수	2	－	2	2	2
	참고인 지정 사건 수 (참고인 수)	2(4)	－	2(4)	2(6)	2(5)
2023	변론 건수	－	4	2	1	1
	참고인 지정 사건 수	－	－	－	1(2)	1(2)

연도	구분	위헌법률 (건가)	탄핵 (건나)	권한쟁의 (건라)	제68조제1항 헌법소원(건마)	제68조제2항 헌법소원(건바)
	(참고인 수)					
	변론 건수	—	7	4	2	—
2024	참고인 지정 사건 수 (참고인 수)	—	—	1(2)	2(4)	—
	변론 건수	—	26	4	—	—
2025	참고인 지정 사건 수 (참고인 수)	—	—	—	—	—
	변론 건수	3	40	15	5	4
총계	참고인 지정 사건 수 (참고인 수)	3 (6)	0	4 (8)	5 (12)	3 (7)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6건의 사건에 대해 참고인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²¹⁾,

2022년을 제외하고는 참고인 지정 건수가 2021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에 그쳐 예산 편성 당시 예상된 건수를 하회하였고, 2025년의 경우 참고인 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사업에 배정된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음.

< 최근 5년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참고인 지정 사건 수	집행액	불용액(불용률)
2021	18	2건	6	12(67%)
2022	18	8건	25	△7(△39%)
2023	18	2건	6	12(67%)
2024	18	3건	11	7(39%)
2025	18	0건	0	18(100%)

자료: 헌법재판소

21) 2025년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예산 편성 근거
18백만원 = 150만원(평균단가) × 2명(평균참고인수) × 6건(예산건수)

- 동 사업의 추진 목적이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을 통해 참고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참고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함인 점, 헌법재판은 일반 민·형사소송 재판과 달리 그 결과가 당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론 개최 및 참고인 진술 기회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를 검토하여 활용도 제고 및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 심리 시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인 선임 및 진술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헌법재판의 적정성·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처리사건의 양적 증가와 심판대상의 다양화 및 전문화 경향에 대응하여 재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충실한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판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및 헌법재판소장의 자문기구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예산액 6억 7,100만원 중 6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활동운영지원	671	671	—	671	654	—	17	597
헌법재판업무지원	267	267	—	267	254	—	13	242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지원비	221	221	—	221	221	—	—	199
기록물 관리 및 보존	143	143	—	143	140	—	3	64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10	10	—	10	8	—	2	11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30	30	—	30	30	—	—	81

자료: 헌법재판소

나. 장기 미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헌법재판소법」 제38조²²⁾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기간을 둔 이유는 적정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심판사건의 접수·처리 현황 및 미제건수를 살펴 보면, 2021년 2,827건이 접수되고, 2,62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제건수는 1,51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3,092건이 접수되고, 3,111건이 처리되며, 미제건수는 1,382건을 기록하였는바,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미제건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및 미제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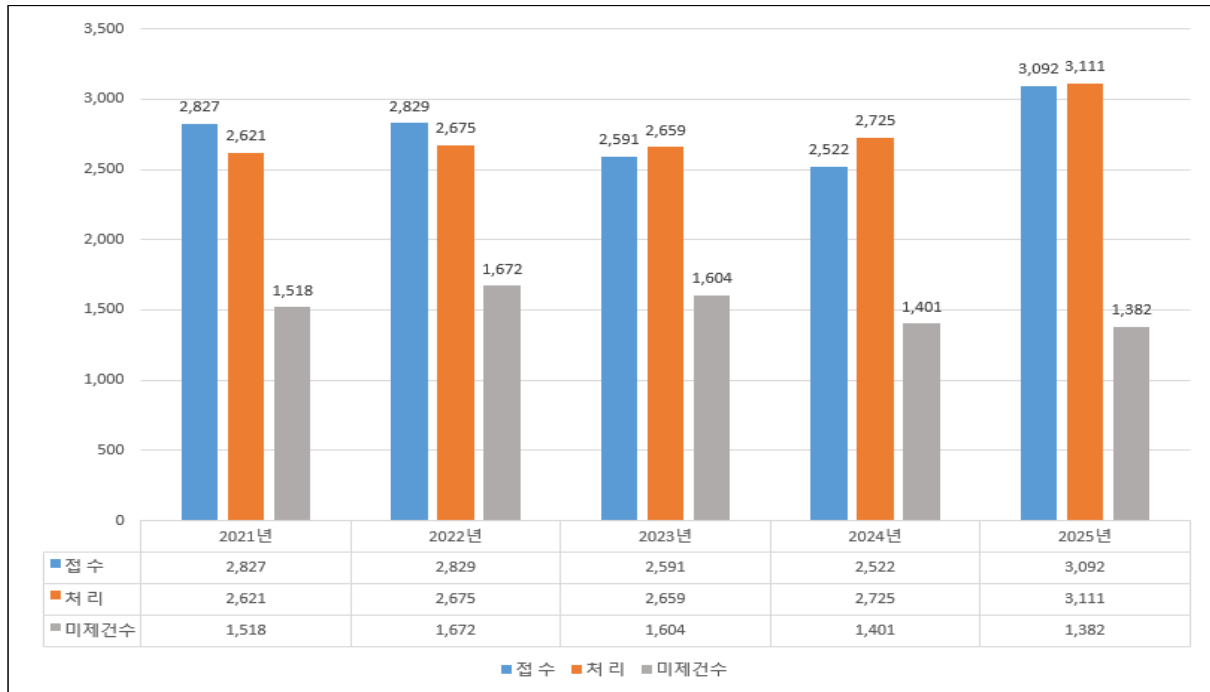
(단위: 건, %)

연 도	접 수	처 리	당년접수대비 처리율	미제건수
2021	2,827	2,621	92.7	1,518
2022	2,829	2,675	94.6	1,672
2023	2,591	2,659	102.6	1,604
2024	2,522	2,725	108.0	1,401
2025	3,092	3,111	100.6	1,382

자료: 헌법재판소

22)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및 미제 건수 >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판사건 접수 후 2년이 경과한 미제사건은 2021년 282건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456건, 2023년 484건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2024년 426건, 2025년 410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미제 사건 현황 >

(단위: 건)

연 도	계	심리기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2021	1,518	485	320	431	282
2022	1,672	433	269	514	456
2023	1,604	401	294	425	484
2024	1,401	401	238	336	426
2025	1,382	378	257	337	410

자료: 헌법재판소

□ 특히 심판사건 접수 후 2년 이상 경과한 미제 사건 중 2년 경과 3년 이내의 사건이 2020년의 경우 185건에서 2025년 220건으로, 3년 경과 4년 이내 사건의 경우 2021년 5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4년 경과 미제 사건의 경우 2021년 41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증가하였는바,

2026년 4월 말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49건의 사건 목록을 살펴 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중요성 및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2년 이상 경과 미제 사건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년 경과 3년 이내	185	327	319	227	220
3년 경과 4년 이내	56	83	145	144	116
4년 경과	41	46	20	55	74
합계	282	456	484	426	410

자료: 헌법재판소

< 장기 미처리 헌법재판 사건 목록('26. 4. 30. 기준) >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접수일
2019헌마68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9.06.28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02.12
2020헌마11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08.21
2020헌마113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2020.08.24
2020헌마119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2020.09.04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접수일
2020헌마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2020.10.12
2020헌마4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03.18
2020헌마4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03.31
2020헌마841	불기소처분취소	2020.06.16
2020헌바559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2020.11.13
2020헌바579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	2020.12.03
2021헌가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위헌제청	2021.06.21
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08.23
2021헌마122	변호인 접견시 노트북 등 지참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2021.01.25
2021헌마129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10.20
2021헌마206	불기소처분취소	2021.02.15
2021헌마26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03.02
2021헌마573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05.21
2021헌마71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 위헌확인	2021.06.18
2021헌마785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2021.07.02
2021헌마96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2021.08.12
2021헌마976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08.18
2021헌마99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08.20
2021헌바13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021.05.31
2021헌바134	민법 제146조 위헌소원	2021.06.01
2021헌바145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2021.06.11
2021헌바204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21.07.23
2021헌바271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1.09.14
2021헌바284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2021.09.24
2021헌바290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2021.09.30
2021헌바29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10.01
2021헌바3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1.11.10
2021헌바3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1.11.10
2021헌바343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2021.11.25
2021헌바37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1.12.10
2021헌바38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소원	2021.12.14
2022헌가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2.02.25
2022헌마100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등 위헌확인	2022.01.25
2022헌마208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위헌확인	2022.02.18
2022헌마238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2022.02.23
2022헌마25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22.02.25
2022헌마35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2022.03.23
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2.04.04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접수일
2022헌바10	난민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2.01.18
2022헌바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2.01.20
2022헌바5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2.03.07
2022헌바74	민법 제4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22.03.18
2022헌바79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2022.03.31
2022헌바85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2022.04.13

자료: 헌법재판소

- 다만, 4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의 대부분(74건 중 72건, 97.3%)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인 상황에서 2026년 4월 「헌법재판소법」 개정²³⁾에 따른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증가로 인해 장기미제 사건의 누적 현상은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청구인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년 경과 미제사건(74건)의 유형별 분류 >

(단위: 건)

구분	위헌법률 (헌가)	탄핵 (헌나)	권한쟁의 (헌라)	제68조제1항 헌법소원(헌마)	제68조제2항 헌법소원(헌바)
건수	2	—	—	36	36

자료: 헌법재판소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2.>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2.>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재판소원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단위: 건)

접 수			처 리			심 리 중	
전체	재판소원		계	각하	취하	전원부 심리 중	지정부 심리 중
3,044	본안	1,233	1,014	1,008	6	10	209
	재심	82	69	69	—	—	13
	계	1,315	1,083	1,077	6	10	222

*26. 6. 30.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또한 헌법심판 사건에 대한 심판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제 사건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종국 결정 사건이 신속히 선고될 수 있도록 심리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10년(2016년~2025년)간 헌법재판소의 총 처리대상 사건 수를 살펴보면, 2016년 2,697건에서 2025년 4,493건으로 1,796건이 증가하였고, 헌법재판소 사건 결정 건수는 2016년 1,915건에서 2025년 3,082건으로 1,167건 증가하였음.
-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에 대한 결정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 사건²⁴⁾인데, 2016년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건수(1,915건) 중 약 70%(1,344건)를, 2025년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건수(3,082건) 중 약 80%(2,465건)를 차지하였음.

<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 사건 접수·결정 등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6	2025	증감
총 처리대상 사건 수* (본년 접수 건수 + 전년 미제 건수)			2,697 (1,951+746)	4,493 (3,092+1,401)	1,796
헌법재판소 결정 건수			1,915	3,082	1,167
헌마 사건	각하 결정		1,005	2,050	1,045
	본안 결정		339	415	76
헌바 사건	각하 결정		337	433	96
	본안 결정		207	151	△56
헌가 사건			23	16	△7
헌나 사건			0	10	10
헌다 사건			1	0	△1
헌라 사건			3	7	4
심리 진행중인 사건수			721	1,382	661
취하 건수			61	29	△32

자료: 헌법재판소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 사건에 대한 결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344건에 대해 심리·결정하였는데, 1,344건 중 1,005건(75%)에 대하여 각하결정하였고, 2025년의 경우 2,465건 중 2,050건(83%)에 대해 각하결정하여, 헌마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 건수 및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 사건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헌법재판소가 소관하는 사건 중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유형으로 볼 수 있는바, 본안 판단(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경우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성 저하 및 헌법소원제도의 실질적 권리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증가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전 안내와 상담 제공을 강화하여 각하 사건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헌법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본부운영지원(103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소 홍보(공보)활동, 청사관리 등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2억 9,200만원 중 40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본부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운영지원	4,292	4,292	△4 4	4,292	4,063	—	229	4,033
홍보(공보)활동	289	289	—	289	286	—	3	302
정책연구용역 등	50	50	—	50	45	—	5	45
차량 임차	126	126	△4	122	122	—	0	126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등	203	203	—	203	204	—	△1	161
청사보안장비 등 확충	53	53	—	53	51	—	2	233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46	46	—	46	44	—	1	40
사회복무요원 운용	103	103	—	103	87	—	15	104
사이버어학교육 등	40	40	4	44	43	—	0	45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1,596	1,596	—	1,596	1,558	—	38	1,778
청사관리	256	256	—	256	227	—	29	258
시설 보완공사	494	494	—	494	484	—	10	409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27	27	—	27	27	—	0	24
도서관 운영 및 관리	30	30	—	30	30	—	0	33
청사 환경개선공사	981	981	—	981	853	—	128	476

자료: 헌법재판소

나. 사이버어학교육 등 수요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사이버어학교육 등 내역사업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외국어 능력 배양 및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210-01)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현액 4,400만원 중 4,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사이버어학교육 등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이버어학교육 등	40	40	4	44	43	0	45
일반수용비(210-01)	40	40	4	44	43	0	45

자료: 헌법재판소

- 당초 동 사업 예산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기조에 따라 재판소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 내역사업 내 세부 과정 중 하나인 ‘전화외국어’ 과정의 집행액이 당초 내역사업 전체 예산액의 76.3%에 달하는 3,053만원을 기록하는 등 예산을 대폭 초과 집행함으로써 내역사업 전반의 재원 부족 사태를 초래하였음.

< 최근 4년간 사이버어학교육 등 종류별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부족액
2022	사이버어학	12,330	4,142	△8,188
	사내어학	7,560	—	△7,560
	전화외국어	26,400	27,681	1,281
	단수조정	△71	—	71
	계	46,219	31,823	△14,396
2023	사이버어학	12,324	3,918	△8,406
	사내어학	7,560	6,708	△852
	전화외국어	26,400	32,334	5,934
	계	46,284	42,960	△3,324
2024	사이버어학	12,324	3,988	△8,336
	사내어학	7,560	8,211	651
	전화외국어	26,400	32,748	6,348
	단수조정	△284	—	284
	계	46,000	44,947	△1,053
2025	사이버어학	6,324	4,854	△1,470
	사내어학	7,560	8,031	471
	전화외국어	26,400	30,528	4,128
	단수조정	△284	—	284
	계	40,000	43,413	3,413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따라 회계연도 말인 2025. 12. 12. 불용이 예상되는 동일 세부사업 내 ‘차량 임차’ 사업의 임차료(210-07) 세목²⁵⁾ 예산 4백만원²⁶⁾을 동 사업 일반수용비(210-01) 세목으로 변경하는 세목조정을 거쳐 부족분을 충당·집행하였음.

25) ‘차량 임차’ 사업 임차료(210-07)는 당초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400만원이 세목조정되어, 예산현액 1억 2,2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6) 세부금액은 39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사이버어학교육 등 내역사업 관련 세목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5. 12. 12.	본부운영지원 (1032-302)	210-07	3.9	본부운영지원 (1032-302)	210-01	사이버어학교육 등 내역사업의 교육비 부족분 총당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사이버어학교육 등 신청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25년 지출구조조정으로 교육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세목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 간 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²⁷⁾,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에 따르면 세목 간 조정은 정보화관련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처럼 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 협의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세목 간 조정’을 활용한 자체 예산 변경 집행 자체는 예산 집행의 자율성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감액 확정된 사업에 대

²⁷⁾ 세목간 조정은 세목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해 기관 자체의 수요 통제 노력 없이 타 내역사업의 잔액을 융통하여 초과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연도별 어학교육 누적 신청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84명에서 2025년 440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선발 기준이나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자 전원을 그대로 선발·지원하는 등 예산 수요 통제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사이버어학교육 등 신청인원 현황 >

(단위: 명, 누적)

연도	신청현황			
	사이버어학	전화외국어	사내어학	합계
2022	126	158	—	284
2023	204	170	16	390
2024	205	187	25	417
2025	226	196	18	440

※ 분기마다 과정별로 신청받아 운영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어학교육 등 복리후생 성격의 사업 집행 시, 확정된 예산 규모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분기별 선발 정원제 도입, 과정별 지원 한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자체 수요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헌법재판 경연대회·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정보자료실 운영,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18억 6,500만원 중 18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65	1,865	—	1,865	1,853	—	12	1,856
헌법재판연구활동	146	146	—	146	138	—	8	124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6	16	—	16	17	—	△1	16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72	72	—	72	69	—	4	72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43	43	—	43	45	—	△2	53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1,488	1,488	—	1,488	1,488	—	0	1,488
정보자료실 운영	55	55	—	55	55	—	0	30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21	21	—	21	18	—	3	18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19	19	—	19	19	—	0	—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보안	5	5	—	5	4	—	1	5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	—	—	—	—	—	—	50

자료: 헌법재판소

나.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실적 저조 및 전면 재검토 필요

-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업무 효율성 도모 등을 목적으로 국외 현지에 거주하는 법률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법학 전공자를 통신원으로 위촉하여 국외의 헌법, 헌법재판 관련 최신 소식 등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360만원이 편성되어 13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외통신원 사업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외통신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 등 일정 심사를 거친 후 1년 단위로 위촉(활동결과에 따라 재위촉 가능)하고 있으며, 위촉된 국외통신원은 정기적으로 국외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재판기관의 최근 판례 동향을 조사하는 기본직무와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수시직무를 수행하게 됨²⁸⁾.

< 헌법재판연구원 국외통신원 제도 개요 >

목적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업무 효율성 등을 도모
운영국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러시아, 중국, 오스트리아 등 국외통신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
자격요건	국외 현지에 거주하며 법률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국외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 완화 가능
모집절차 등	- (모집 공고) 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인터뷰 가능

28) 「헌법재판연구원 국외통신원제도 운영 지침」

	- (합격자 발표)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위촉 및 해촉	- 1년 단위로 위촉하며, 국외통신원의 활동결과에 따라 재위촉 가능 - 국외통신원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외통신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촉기간 중 해촉 가능
국외통신원 직무	- (기본직무: 정기적으로 수행) 국외 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재판기관의 최근 판례 동향 조사 - (수시직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행) 국외 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헌법재판연구 관련 자료 조사, 국제교류·협력, 국제 학술 대회, 국외출장 관련 현지 지원
직무수당	- (기본직무) 보고서 1건당 30만원 ※ A4 2장 이상 분량의 보고서 의무 제출 - (수시직무) 보고서 1건당 20만원~40만원(보고서 내용, 분량, 제출기한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등급 40만원, 나등급 30만원, 다등급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 - (상한액) 기본직무와 수시직무 수당 총액이 1인당 월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헌법재판소

- 한편, 동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실적 미달과 예산 불용으로 과거 국회 결산 심사 시마다 ‘유명무실한 운영’, ‘형식적 운영’, ‘사업 지속 여부 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바 있으며, 최근 4년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의 성과는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2025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36%로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최근 4년간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연도	예산 편성	집행 내역	집행률
2022	300×12건=3,600천원	300천원×7건=2,100천원	58%
2023	300×12건=3,600천원	300천원×10건=3,000천원	83%
2024	300×12건=3,600천원	300천원×6건=1,800천원	50%
2025	300×12건=3,600천원	300천원×3건+400천원×1건=1,300천원	36%

자료: 헌법재판소

- 본 사업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조한 근본 이유는 연구원의 실질적인 연구 수요와 괴리된 형식적 운영 체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특정인에 의존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인력 운용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국외통신원 보고서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국외통신원 체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수시직무 수행 실적은 2025년 단 1건에 불과함. 이는 국외통신원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채 통신원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판례 동향을 나열하는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에 그치고 있음을 방증함.
- 또한 신규 전문가 유입 없이 기존 통신원을 장기 재위촉하는 운영 방식은 사업 본연의 목적인 새로운 학문적 시각 확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 14기(2025. 9. ~ 2026. 9.)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명의 신규 통신원이 위촉되었으나 2018년부터 8년째 동일 국가의 통신원으로 활동 중인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장기 재위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 국외통신원 운영 현황 >

기수	활동기간	명단	지역	최초 선정일 (신규, 재위촉 여부)
10기 (6인)	2021. 9. ~ 2022.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조○○	독일	2020. 9.(재위촉)
		서○○	미국	2020. 9.(재위촉)
		김○○	멕시코	2014. 9.(재위촉)
		김○○	프랑스	2019. 9.(재위촉)

기수	활동기간	명단	지역	최초 선정일 (신규, 재위촉 여부)
		서○○	일본	2019. 9.(재위촉)
11기 (6인)	2022. 9. ~ 2023.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조○○	독일	2020. 9.(재위촉)
		서○○	미국	2020. 9.(재위촉)
		김○○	프랑스	2019. 9.(재위촉)
		서○○	일본	2019. 9.(재위촉)
		이○○	프랑스·벨기에	2022. 9.(신규)
12기 (5인)	2023. 9. ~ 2024.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서○○	미국	2020. 9.(재위촉)
		서○○	일본	2019. 9.(재위촉)
		이○○	프랑스·벨기에	2022. 9.(재위촉)
		김○○	독일	2023. 9.(신규)
13기 (5인)	2024. 9. ~ 2025.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이○○	프랑스·벨기에	2022. 9.(재위촉)
		김○○	독일	2023. 9.(재위촉)
		김○○	영국	2024. 9.(신규)
		이○○	미국	2024. 9.(신규)
14기 (6인)	2025. 9. ~ 2026. 9.	정○○	독일	2018. 9.(재위촉)
		이○○	프랑스·벨기에	2022. 9.(재위촉)
		이○○	미국	2024. 9.(재위촉)
		박○○	미국	2025. 9.(신규)
		황○○	미국	2025. 9.(신규)
		한○○	일본	2025. 9.(신규)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마지막으로 제출된 보고서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해당 국가의 판례나 법적 쟁점을 다룬 A4 10쪽 내외의 간략한 연구물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국내외 언론보도나 학술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WEB-DB) 또는 해외에 파견된 연구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외통신원을 운용할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최근 4년간 국외통신원 보고서 게시 현황 >

게시연도	보고서 주제	국가	분량
2023	독일 기본법상 아동 기본권 조항 신설에 관한 논의	독일	10쪽
	오사카시 ‘혐오표현의 대처에 관한 조례’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11쪽
	변호사 사무실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등의 합헌성	프랑스	18쪽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학 입시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관한 논의	미국	9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럽연합 복구기금 관련 결정	독일	10쪽
	도쿄지방법재판소의 동성혼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합헌판결	일본	21쪽
	대마 합법화에 관한 독일의 헌법적 논의	독일	12쪽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2022년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	일본	18쪽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근친강간죄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프랑스	14쪽
2024	독일의 선거에 관한 사법심사에서의 헌법적 논의	독일	11쪽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편집재량권에 관한 논의	미국	12쪽
	위헌 논란 중인 2023년 개정 독일 연방선거법	독일	11쪽
	병가 중인 직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프랑스	12쪽
	2024년 구(舊) 동독지역 주의회 선거 결과와 그에 따른 여파	독일	9쪽
	미성년 젠더확정치료 금지 법안의 합헌성 논의	미국	11쪽
2025	독일 기본법상 생부의 지위 -민법상 부자관계 부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관한 헌법소원-	독일	12쪽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의 합헌성 논쟁	미국	13쪽
2026	종교계 차터 스쿨과 정교분리원칙	미국	10쪽
	독일의 ‘군복무 현대화법’을 둘러싼 헌법적 논의	독일	11쪽
	생활보호기준 인하의 위법성과 생존권의 구체화	일본	21쪽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 따라서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36%까지 하락하는 등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은 향후 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존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임.

다.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필요

-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사업은 외국의 헌법재판제도 이론 및 실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은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총 6,876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요 >

구 분	주요내용
행사명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주 제	“권력의 충돌과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
발표자	- 독일: 안나 베티나 카이저(Anna-Bettina Kaiser),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교수 - 프랑스: 안드레 루(Andre Roux),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 명예교수 - 미국: 존 유(John Yoo),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교수
일 시	2025년 8월 22일(금) / 14:00 ~ 17:40
장 소	헌법재판연구원 8층 대강의실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연구원은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용역비(210-14) 세목에서 3,100만원을 집행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발표자료집 인쇄비 및 통·번역료 등을 일반수용비(210-01) 세목에서, 초청장 발송료를 공공요금 및제세(210-02) 세목에서 각각 직접 지출하였으며, 동 심포지엄 행사에 사용된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예산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예산과목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210-01)	주제발표 등 사례비	5,400	6,000
	발표자료집 인쇄비	1,000	1,694
	통·번역비	20,000	15,27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초청장 발송료	1,500	556
일반용역비 (210-14)	행사대행 용역	31,000	31,000
국외업무여비 (220-02)	외빈 항공요금 및 숙박비	11,404	12,110
업무추진비 (240-01)	회의 운영비	2,000	2,120
합 계		72,304	68,759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²⁹⁾에 따르면, 행사 이행의 주요 과업과 관련된 항목은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 용역비 총액에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용역 과업지시서상 과업 내용에는 “발표자료집 제작”과 “초청장 발송”이 대행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비용을 연구원이 별도로 부담한다는 예외 사항이 없음에도 헌법재판연구원은 과업지시서와 달리 인쇄비 및 발송료 등을 일반수용비(210-01) 및 공공요금및제세(210-02) 등 타 세목에서 분리 집행하였음.

29)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⑤ 수요기관은 행사장 조성, 참가자 관리 등 주요 과업과 관련된 항목(대관비, 식·음료비, 초청비, 항공권, 홍보비 등)의 경우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한다.

<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행사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

2. 행사 대행업체 업무 주요내용

가. 주요 업무

- (초청 외빈 수행) 공항 및 숙박 수송, 외빈 수행
- (통역 및 번역) 회의 통역 및 자료집 번역 연계 지원
- (행사장 조성 및 운영) 행사장 설치, 오·만찬, 진행요원 관리 등
- (회의 발표집 제작) 발표·토론자료 등 발표집 제작
- (초청 및 등록) 초청장 발송 및 참석자 등록 지원
- (문화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초청 외빈 문화 프로그램 운영
- (홍보, 제작 등) 초청장·포스터 제작 및 발송, 기념품 제작, 매체 및 유관기관 홍보, 결과 보고서 작성 등

나. 예산에 관한 사항

- 아래 사항은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비용 부담
 - 초청 외빈 항공·숙박 및 사례금, 통·번역료

자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 이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은 행사대행 용역 예산 규모(3,100만원)가 시장 단가 대비 낮게 책정됨에 따라 용역사들의 입찰 기피로 유찰이 발생하는 등 계약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이에 용역사의 과업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인쇄비 및 발송료 등의 실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리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현행 예산 편성 구조를 살펴보면, 자료집 제작과 초청장 발송 경비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및제세 세목으로 분산 편성되어 정작 사업의 핵심인 행사대행 일반용역비의 총액이 낮게 고착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³⁰⁾. 이는 과거의 기관 직접 수행 관행이 현재

의 용역 수행 방식과 괴리되면서 발생한 비대칭적 구조로, 일반용역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용역의 경쟁력 저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기관은 파편화된 예산 구조를 보완하고자 사업비를 쪼개어 집행하는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는바, 이는 행사대행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통합 발주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업무수행 방식과 일치하는 적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료집 제작비 및 초청장 발송료 등 행사 필수 경비를 일반용역비 세목으로 재편성하여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과업과 예산비목이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분리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조달 지침의 취지에 맞게 필수 과업을 일괄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0) < 헌법재판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

[단위 : 천원, 1\$]

2025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1]일반수용비		173,403	
3.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6,400	
가. 주제발표 등 사례비	5,400,000원=	5,400	
나. <u>초청장 및 자료집 제작</u>	<u>1,000,000원=</u>	<u>1,000</u>	
다. 통·번역비 등	20,000,000원=	20,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1,500	
2.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1,500	
가. <u>초청장 발송료</u>	<u>1,500,000원=</u>	<u>1,500</u>	
[210-14]일반용역비		31,000	
1. <u>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u>	<u>31,000,000원=</u>	<u>31,000</u>	

9. 해외연수(1034-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외연수 사업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에게 외국 법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억 6,500만원 중 4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해외연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연수	565	565	—	565	486	—	79	604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287	287	—	287	176	—	111	300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116	116	—	116	159	—	△43	140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27	27	—	27	39	—	△12	38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31	31	—	31	28	—	3	31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7	17	—	17	15	—	2	15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 과정	87	87	—	87	69	—	18	8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장기해외연수 학자금의 초과집행 지양 필요

- 해외연수 세부사업 내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학자금 관련 일반수용비 (210-01)는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전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3,466만원) 대비 80.8% 감액된 666만원으로 확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예산액의 7.3배에 달하는 4,887만원으로, 당초 확정된 예산 범위를 대폭 초과하여 집행되었음.

< 최근 3년간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학자금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세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수용비 (210-01)	2023	29,917	22,680	7,237
	2024	34,664	35,236	△572
	2025	6,664	48,873	△42,209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재부와 의 심의·협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 규모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 부족분은 동일 세부사업 중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발생한 불용³¹⁾ 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예산 초과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운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 첫째, 국회의 예산 감액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연수 추진임.

31) 연수 예정자의 질병으로 인한 연수 철회에 따른 불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과 12월에 이미 2025년도 일반직 연수자 2인을 선발해 두었음. 이후 2024년 12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 확정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변경된 재정 여건에 맞추어 연수 인원을 조정하거나 일정을 유예하는 등 인력 운용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그러나 별도의 계획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연수를 진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산 부족을 야기하였음.

< 헌법연구관 및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현황 >

내역사업	성명	직급	국가	선발시점	연수기간	비고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박○○	헌법연구관	미국	2023. 7.	2024. 7.~2025. 7.	
	황○○	헌법연구관	미국	2023. 7.	2024. 8.~2025. 8.	
	전○○	헌법연구관	미국	2024. 7.	2025. 8.~2026. 8.	2025. 11. 철회
	김○○	헌법연구관	독일	2024. 7.	2025. 6.~2026. 11.	
	김○○	헌법연구관	영국	2024. 9.	2025. 7.~2026. 7.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이○○	법원서기관	미국	2023. 7.	2024. 11.~2025. 10.	
	정○○	서기관	캐나다	2023. 7.	2024. 5.~2025. 4.	
	박○○	부이사관	미국	2024. 7.	2025. 12.~2026. 12.	
	이○○	법원서기관	미국	2024. 12.	2025. 12.~2026. 12.	

자료: 헌법재판소

□ 둘째, 타 내역사업의 불용 재원을 활용한 사후적 예산 충당임.

헌법재판소는 부족한 일반직 학자금 예산을 동일 세부사업 내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으로 충당하였는데, 해당 불용액은 2025년 11월 헌법연구관 1인의 연수 철회로 인해 발생한 재원임. 이처럼 당초 확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연수를 추진

한 뒤, 연말에 발생한 타 사업의 불용 재원을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의 재정 운용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연수자를 선발하더라도 국회 심의 결과 예산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에 연동하여 연수 인원이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타 내역사업의 불용 재원을 활용한 초과 집행을 지양하고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10. 국제교류(1034-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교류 사업은 베니스위원회, 세계헌법재판회의,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에 참석하고,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AACC 연구사무국 운영, AACC 연구 컨퍼런스 개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6억 1,400만원 중 5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제교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교류	614	614	△18 18	614	576	—	38	555
베니스위원회 참석	74	74	△6	68	48	—	20	74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79	79	—	79	68	—	11	4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55	55	—	55	56	—	△1	55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초청 세미나 개최	42	42	—	42	38	—	3	42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25	25	7	31	26	—	5	25
AACC 연구사무국 운영	117	117	11	128	131	—	△3	143
AACC 연구 컨퍼런스 개최	186	186	△4	182	182	—	0	186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37	37	△8	29	27	—	2	27

자료: 헌법재판소

나. AACC 사무실 관리비 연례적 세목조정 지양 필요

- 국제교류 사업의 내역사업인 AACC³²⁾ 연구사무국 운영 사업은 연구 사무국의 연구·조사, 파견제도, 국제회의 개최 등 핵심 사업의 지원 및 내실 있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2,800만원을 초과한 1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개요 >

□ 조직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15층
- 면적: 433m², 130평
- 임차료: 서울특별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무상지원
- 인력구성: 총괄국장(헌법재판소 국제협력국장 겸직), AACC지원과 직원, 국내외 파견자 등 15명 (2026. 7. 기준)

- **(연혁)** 2016. 8월 AACC 이사회 결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3개 상설사무국 설립 (연구사무국은 2017. 1월 출범)

※ AACC 상설사무국 현황(3개 기관에 운영권한을 위임)

- 연구사무국(대한민국 현재): 아시아 헌법재판 관련 연구·조사 활동 기획 및 수행
- 행정사무국(인도네시아 현재): 연합과 회원기관에 대한 의전 및 행정지원
-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튀르키예 현재): 회원기관 교육 등 시행

- **(활동)** 설립목적에 따라 연구·조사자료집 발간, 국제회의 개최 등 수행

- 매년 헌법·헌법재판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회원기관들로부터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 발간
- 회원기관 재판관급·연구관급 인사를 초청(격년 단위)하여 선정된 연구·조사 주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자료: 헌법재판소 자료를 편집

32)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개요, *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성격) 아시아의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협의체 (연혁) 2010. 7월 창설 이후 현재 아시아 22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이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초대 의장기관 수행

※ AACC 회원기관 현황: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 당초 동 내역사업의 예산으로는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AACC 연구 컨퍼런스 개최’,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내역사업 등의 일반수용비(210-01) 세목³³⁾으로부터 동 사업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목으로 1,200만원³⁴⁾이 조정되었는바, 이는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 관리비³⁵⁾ 부족에 따른 것임.

< 2025회계연도 AACC 연구사무국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ACC 연구사무국 운영	117	117	11	128	131	△3	143
일반수용비(210-01)	1	1	△1	0	0	0	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6	116	12	128	130	△3	141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매년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관리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리비 부족 소요를 일부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향후 관리비 부족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함.

33) ‘AACC 연구 컨퍼런스 개최’ 내역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서 4백만원,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내역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서 7백만원, ‘AACC 연구사무국 운영’ 내역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서 1백만원을 각각 세목조정하였음.

34) 세부금액은 1,160만원임.

35) 인건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임.

< 최근 4년간 AACC 연구사무국 운영 공공요금및제세 세목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세목조정 사유
국제 교류 (1034-305)	2022	△11.2	11.2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 관리비 부족분 총당
	2023	△14.5	14.5	
	2024	△7.5	7.5	
	2025	△11.6	11.6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러나 최근의 가파른 공과금 및 물가 상승 추이³⁶⁾와 헌법재판소의 자체 집행 전망을 감안하면 증액된 예산액³⁷⁾으로도 향후 예상되는 관리비 소요를 온전히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인바, 인상 추이를 뒤따라가는 보수적 예산 편성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26년도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도 연례적인 재원 부족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음.

36) 2023~2025년도 관리비 집행액은 연평균 4.6% 증가하였음.

37) < 헌법재판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

[단위 : 천원, 1\$]

2026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2] 공공요금및제세		147,140	
3.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141,440	
가. 인터넷 이용료		23,836	
1) 국가통신망 업무망	8,164,000원=	8,164	
2) 국가통신망 인터넷망	8,736,000원=	8,736	
3) 사설인터넷망	6,936,000원=	6,936	
나. 관리비(전기, 가스요금 등)	9,717,000원*12월=	116,604	
다. 우편료 및 등록비 등	1,000,000원=	1,000	

< 최근 5년간 AACC 연구사무국 관리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관리비 예산액	관리비 집행액	부족분
2022	78,486	99,264	△20,778
2023	80,840	106,456	△25,616
2024	91,032	110,527	△19,495
2025	91,032	116,527	△25,495
2026	116,604	126,710(예상)	△10,106(예상)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관리비 인상 추이 및 과년도 집행 실적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필요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집행지침상 자율성을 이유로 한 연례적·반복적 세목조정으로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를 약화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11. 재판자료확충(1035-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자료확충 사업은 헌법재판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의 확보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발간,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헌법논총 발간,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도서관 자료 구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3억 8,600만원 중 3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재판자료확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자료확충	386	386	—	386	362	—	24	340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7	7	—	7	9	—	△2	7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추록 발간	11	11	—	11	11	—	0	11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발간	9	9	—	9	7	—	1	9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37	37	—	37	18	—	19	37
헌법재판소 공보 발간	32	32	—	32	26	—	6	47
헌법논총 발간	17	17	—	17	12	—	5	17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42	42	—	42	42	—	0	42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4	4	-	4	10	-	△6	-
도서관 자료 구입	226	226	-	226	226	-	0	170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의 집행 문제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은 해당 연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 매 월 판례심의회소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건을 수록·발간하는 사업으로, 1990년에 판례집 제1권이 발간된 이후 2025년 현재 제37권 1집 까지 발간되었음.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편성된 예산액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은 4,400만원의 예산 중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9%)되고, 1,800만원이 불용(불용률 41%)되었고, 2022년은 4,000만원의 예산 중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5%)되고, 900만원이 불용(불용률 22.5%)되었으며, 2025년의 경우 3,700만원의 예산 중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되고, 1,900만원이 불용(불용률 52%)되어 편성 예산 중 상당 액수의 불용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

사업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 세부내역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2021	44	26	18	•발간비 25,308천원(27원×1682면×550부) •제안서평가 400천원(200천원×2인)
	2022	40	31	9	•발간비 30,448천원(31원×1756면×550부) •제안서평가 400천원(200천원×2인)
	2023	37	38	△1	•발간비 37,829천원(제34권2집: 34원×860면×500부 + 제35권1집: 35원×1,316면×500부) •제안서평가 400천원(200천원×2인)
	2024	37	37	—	•발간비 36,179천원(제35권2집: 34원×786면×500부 + 제36권1집: 36원×1,262면×500부) •제안서평가 400천원(200천원×2인)
	2025	37	18	19	•발간비 17,204천원(제36권2집: 42원×406면×500부 + 제37권1집: 39원×454면×500부) •제안서평가 400천원(200천원×2인)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동 사업의 경우 판례집에 법리나 법조항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나 검토가 이루어진 사건을 수록하고, 수록 대상 결정 건수 및 분량은 판례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바, 소요 예산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례집 수록 사건 수가 감소(2021년 97건, 1680면 → 2025년 38건, 860면)함에 따라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내역 >

발간연도	권호	수록 결정 사건 건수	면수
2021	제33권1집	54건	886면
	제32권2집	43건	796면
2022	제34권1집	41건	722면
	제33권2집	48건	1,034면
2023	제35권1집(상)(하)	64건	1,316면
	제34권2집	52건	860면
2024	제36권1집(상)(하)	63건	1,262면
	제35권2집	43건	786면
2025	제37권1집	20건	454면
	제36권2집	18건	406면

자료: 헌법재판소

- 판례집 발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행률 부진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집행성과 분석 및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헌법재판정보화(1035-5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은 헌법재판 업무의 정보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노후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장비 교체·확충 및 사이버 보안 활동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74억 9,900만원 중 73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정보화	7,499	7,499	—	7,499	7,345	—	154	8,424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	925	925	—	925	922	—	2	986
정보시스템 확충	2,494	2,494	—	2,494	2,460	—	34	3,068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2,191	2,191	—	2,191	2,190	—	1	2,469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1,677	1,677	—	1,677	1,565	—	112	1,601
일반운영 등	212	212	—	212	206	—	5	3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 및 안내·홍보 강화 필요

-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은 2024년 지능형 헌법재판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을 통해 2억 7,814만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재판 및 회의 등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회의록을 자동 작성함으로써 내부 직원의 연구 및 심판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임.

<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1~4단계로 구축된 시스템 활용 현황 >

단계	시스템명	대상	서비스 설명	활용 현황
1단계 (‘21)	지능형 민원상담 (챗봇)	대 국민	민원상담 및 심판 절차 안내 등을 대화형 프로그램(챗봇)으로 구축하여 24시간 365일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	공식운영 후 활용건수 (‘23.1.~’26.3.) - 이용자수: 28,241건 - 대화건수: 110,413건
	지능형 통합검색 (대 국민용)	대 국민	법률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일상 용어를 사용하여 손쉽게 재판소 판례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공식운영 후 검색건수 (‘23.1.~’26.3.): 2,805,110건
	영상회의실 및 영상회의시스템	내부 직원	재판, 회의 및 교육 등에 활용 가능한 원격 영상회의 환경 마련	공식운영 후 활용건수 (‘22.1.~’26.3.) - 스마트회의실: 738건 - 영상회의시스템: 227건
2단계 (‘22)	재판자료 통합검색 (내부 전문가용)	내부 직원	재판연구에 필요한 전문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한 전문가용 지능형 검색 시스템 구축	공식운영 후 검색건수 (‘23.4.~’26.3.): 396,622건
	연구자료 지원 서비스	내부 직원	폭넓은 헌법재판 자료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 참고자료를 주기적으로 검색·제공하는 개인별 서비스 적용	공식운영: ‘23. 1. 2. 등록 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작업 수행
	헌법헌법재판용어 관리 시스템	대 국민	헌법헌법재판 용어의 체계적 관리 및 통일적 사용을 위한 용어 관리시스템 구축	공식운영(‘23. 1. 2.) 후 헌법헌법재판용어 수: 1,996건
3단계 (‘23)	심판사무 등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내부 직원	심판 및 행정업무 중 규칙적·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생산성 제고	공식운영: ‘24. 1. 4. 6개 업무가 각 스케줄러에 의해 주기적으로 작업 수행
	자동번역 서비스	대 국민	재판연구에 필요한 영문 해외자료의 신속한 국문번역 제공 등 번역 업무 효율화를 위해 법률용어에 최적화된 서비스 구축	공식운영 후 활용건수 (‘24.1.~’26.3.): 1,722회
4단계 (‘24)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	내부 직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지능형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 구축	공식운영 후 활용건수 (‘25.1.~’26.3.): 149건
	전자점자변환 서비스	대 국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공식운영 후 활용건수 (‘25.1.~’26.3.): 5,440회

자료: 헌법재판소

- 동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변론·선고 등의 속기록이 정식 등록되기 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시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자동 생성된 속기록을 정식 속기록 등록 이전부터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판부, 연구부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공식 운영 이후의 월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변론기일 증가로 일시적인 특수가 있었던 2025년 1~2월을 제외하면 월평균 활용 건수가 약 3.4건에 불과하여, 뛰어난 실무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활용도가 다소 아쉬운 실정임.

<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 월별 활용 건수 >

(단위: 건)

구 분		월별 등록건수	회의명	사용부서
2025년	1월	44	변론,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홍보담당관실 등
	2월	58	변론,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홍보담당관실 등
	3월	4	변론,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4월	2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5월	5	변론,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6월	2	선고, 위원회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7월	2	선고, 연구회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자료조사과 등
	8월	2	선고, 설명회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9월	5	선고, 연구회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10월	3	국정감사,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11월	5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12월	8	위원회,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자료조사과 등
2026년	1월	2	선고, 재판관회의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2월	2	선고 등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등
	3월	4	기자간담회, 선고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홍보담당관실 등
	4월	2	위원회, 선고	재판부, 연구부, 심판사무과, 평가감사과 등

자료: 헌법재판소

- 특히 2025년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2026년 한 해에만 약 2,657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유사한 규모의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스템 활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투입된 예산 대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4단계)³⁸⁾ 예산 집행 현황 및 유지관리비 내역 >

(단위: 천원)

2024		2025	2026
예산액	집행액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1,336,000	1,237,000 *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 278,140	무상유지보수	26,572 ³⁹⁾

자료: 헌법재판소

- 이러한 시스템 활용률 저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5년에 주요 사건 재판 대응 등으로 인해 각 부서 대상 이용방법 안내와 홍보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각 부서에 시스템 이용방법과 활용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식 회의뿐만 아니라 부서 내 업무협의, 간담회 등 비공식 회의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시스템 고유의 장점과 업무 편의성을 내부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시스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38)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4단계) 사업내용: 전자헌법재판센터 고도화, 전자점자변환 서비스,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

39) 상용SW 23,065천원, HW 3,507천원

13.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운영 관련

가.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운영 관련 결산 개요

-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련 예산은 본부기본경비(1011-250),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재판자료확충(1035-306),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사업에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도에 총 4,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참석수당 등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세부사업명	목 명	예산액	집행액
①본부기본경비	일반수용비(210-01)	25	11
②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일반수용비(210-01)	17	15
③재판활동운영지원	일반수용비(210-01)	9	8
④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수용비(210-01)	7	8
⑤재판자료확충	일반수용비(210-01)	1	1
⑥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일반수용비(210-01)	1	3
합 계		60	46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의 적절성 확보 필요

-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2025년 현재 20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각 위원회의 구성 등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헌법재판소가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 >

연번	위원회 명칭	인원	위원 수	설치근거	역할 및 업무
1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11	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9인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용계획 등을 심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15	외부위원: 11인 내부위원: 4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13	외부위원: 9인 내부위원: 4인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 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4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7	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5인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 등
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12	외부위원: 12인 내부위원: -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규칙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한 자문
6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18	외부위원: 11인 내부위원: 7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
7	헌법재판소 정보공개심의회	6	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4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운영 지침	정보공개 여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8	헌법재판소 청원심의회	5	외부위원: 3인 내부위원: 2인	·청원법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9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8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4인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연번	위원회 명칭	인원	위원 수	설치근거	역할 및 업무
10	헌법재판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7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3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헌법재판소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 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
11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	7	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5인	·헌법재판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 하여 사무처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
12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7	외부위원: 1인 내부위원: 6인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5조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13	헌법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5	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3인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2항 및 10조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
14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17	외부위원: 3인 내부위원: 14인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 선정, 교류, 공보, 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5	헌법논총 편집위원회	7	외부위원: 3인 내부위원: 4인	·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7조	헌법논총 발간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16	헌법재판소 기록물평가심의회	7	외부위원: 3인 내부위원: 4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폐기 여부 평가 심의
17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운영위원회	—	‘26. 5. 현재 위원회 미구성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3조	경연문제 출제 및 경연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18	헌법재판연구 편집위원회	9	외부위원: 7인 내부위원: 2인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3조	「헌법재판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19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성과평가위 원회	—	‘26. 5. 현재 위원회 미구성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7조	연구과제 성과평가 및 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심의
20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9	외부위원: 9인 내부위원: —	·헌법재판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운영방향 및 연구활동 수행에 대 한 자문

자료: 헌법재판소

-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운영 중인 20개의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결정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청원심의회를 들 수 있음.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0)에 따라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의 행사 시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1)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 여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42)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이러한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그 성격상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법률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 수, 위원 구성방법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⁴³⁾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인 내부 위원 외에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⁴⁴⁾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⁴⁵⁾에 따라 심의회 구성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최소한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제8조⁴⁶⁾ 및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2

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기획조정실장·심판지원실장·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45)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사무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6)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

조47)에 따라 심의회 구성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청원심의회⁴⁷⁾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외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헌법재판소 출신의 비중(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100%, 정보공개심의회 50%, 청원심의회 100%)이 높아 관련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청원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 >

위원회	인원	위원 수	외부 위원 중 헌법재판소 출신 위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7인	외부위원 : 2인	• 이00 교수(전 헌법연구관) • 정00 교수(전 헌법연구관)
		내부위원 : 5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심의회	6인	외부위원 : 2인	• 황00 교수(전 헌법연구관)
		내부위원 : 4인	
헌법재판소 청원심의회	5인	외부위원 : 3인	• 승00교수(전 헌법연구관) • 서00교수(전 헌법연구관) • 이0 교수(전 헌법연구관)
		내부위원 : 2인	

자료: 헌법재판소

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⁴⁷⁾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즉, 외부위원의 위촉 비율 및 자격을 법령에 규정한 취지는 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내부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도록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는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청원심의회와 같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헌법재판소 출신의 외부위원 위촉 비중이 높은 경우 명목상으로는 외부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내부와 유사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및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률의 취지에 맞게 외부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또는 청원 제출이 있는 경우 기관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련 사항이 심의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 2024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의 2024년 인건비 사업 불용률은 4%로, 전년 대비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건비 집행률 부진은 과거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문제임 - 2024회계연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은 1.2%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인력충원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공보관 겸임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인건비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26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을 (3.97%)을 하회하는 1.9%를 증액함으로써 인건비 불용률을 낮추고 적정 집행을 확보를 위해 노력함 ○ 또한 겸임으로 운영해오던 공보관 직위를 '25년 7월 보임으로 변경하고 헌법연구관을 총원하는 등 '26년 인건비 집행률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함
○ [지적사항] 헌법연구관이 인사관행적으로 비서실장·공보관의 직위를 겸임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연구관 본연의 연구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해당 보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2024년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공보관 겸임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2억 5,700만원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직위 겸임 관행을 지양하고, 비서실장 및 공보관 직위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별도로 임용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그동안 겸임으로 운영해오던 공보관 직위는 '25년 7월 보임으로 변경하였고, 겸임해제를 통해 헌법연구관을 총원함 - 비서실장 및 공보관 직위에는 헌법재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도 적합한 인력 운용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은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시 특별한 공적여부에 대한 심사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정부는 2019년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특별승진임용 시 특별한 공적여부에 대한 심사 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 임용 취소 규정 마련 －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도 이후 「국회 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제도 개선 완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명예퇴직금 환수 사유 발생 시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 발생 시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 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의 관리를 강화함
○ [지적사항] 본부기본경비 내 직무수행경비의 세목인 ‘직책수행경비(250-02)’는 조직 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함 － 최근 5년간 직책수행경비 불용액 현황 (2020년)100만원, (2021년)400만원 (2022년)6,600만원, (2023년)5,000만원. (2024년)4,600만원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예산편성 시 증원 및 휴·복직 소요 등을 반영하여 직책수행경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재판소장 및 재판관 임명 지연에 따른 공석, 예상치 못한 퇴직·휴직자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함 ○ '26년 직책수행경비 예산은 증원 및 휴·복직 등 실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 하였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도 직책수행경비 예산편성 시, 증원 규모 및 휴·복직 등 소요 등을 더욱 면밀 하게 파악함으로써 직책수행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매년 약 1,000건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신청 처리 건수 5,014건인데,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700건으로 평균 선임률이 14%에 불과함 - 2024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건수는 1,001건, 선임건수는 127건(선임률 12.7%)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신청 건수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 신청절차, 기각사유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민원인 등에게 상시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선대리인 기각사유 홍보 확대를 위해 관련 안내 사항을 공보자료('25년 10월~)로도 인쇄하여 배포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더 쉽게 해당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 [지적사항] 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최근 6개년 평균 8.9%)이 헌법소원심판 선고사건 인용률(최근 6개년 평균 12.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국선대리인 사건의 선고 건수 115건 중 인용된 사건은 12건(인용률 10.4%)으로, 2024년 헌법소원심판 선고 사건 인용률 12% 보다 낮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을 확보하고, 국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단 확보를 위해 전직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관 14명을 '26년 국선대리인단으로 확보하였음 ○ 또한, 우수한 국선대리인단 구성을 위해 우수 변호 등 각종 수상 이력 및 사회활동, 연구활동 이력을 적극 참고하여 신규 국선대리인 18명을 선발함 ○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국선대리인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추가로 모색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에서 참고인을 지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법조인)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분야 참고인 지정 시 전문분야 별로 한 명의 참고인을 지정하여 복수의 전문가 지정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20건의 사건에서 총 44명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참고인 44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이 23명(52.3%)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지정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복수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등 참고인 연구비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지정 시, 재판기관으로서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측에서 추천하는 참고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균형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민·형사사건과 달리 법리적 검토에 중점을 두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참고인 중 법조인이 다수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법조인 지정 시에도 의료법, 국제법 등 여러 개별법 분야에서 인정받는 다양한 참고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5년 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고 재판부 공백도 해소됨에 따라 '26년에는 변론 증가에 따른 참고인 연구비 사업의 활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 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하사건을 제외한 헌법 재판의 평균처리기간은 약 725일로, 180일을 4배 가량 상회하는 수준임. 또한, 심판사건 처리 기간 지연이 장기 미제 사건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기준 2년 이상 경과한 미처리 사건은 201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4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4년 이상 경과한 사건도 55건 존재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헌법연구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사건의 경중, 난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사건 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 증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심리를 위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연구부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음 (‘26년 헌법연구관 5명 증원 예정) - 아울러 숙련된 연구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2025. 12. 23., 법률 제24240호) ○ 또한, 사건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4년 2월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에 재판관별로 부장연구관을 배치하는 등 연구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개편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재판과정에서 실현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영상·만화·동화·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날, 제헌절 등에 선물제공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바, 이벤트를 개최한 달과 그 외의 달의 홈페이지 방문 건수에 현격한 차이를 보임 – 2024년 기준 방문건수가 가장 많은 달인 7월(518,386건)과 가장 적은 달인 2월(30,330건) 사이 약 17배의 차이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의 특정 이벤트 기간 외에도 사업 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강구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많은 학생들이 이벤트 기간 외에도 어린이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한 주기적인 홍보 강화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 등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였음 ○ 향후 어린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방문자수 및 호응도를 분석하고 콘텐츠 개선 등에 반영하겠음
○ [지적사항] 최근 5년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 수행 사업 7건 중 4건(57%)은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3건(43%)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하였고, 7건의 연구 중 4건은 한국헌법학회가, 2건은 한국공법학회가 수행하여 특정 학회와의 계약 비중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할 것	제도개선	○ '20년 및 '21년에는 정책연구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이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후 다양한 학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공고와 병행하여 유관학회, 대학 부설 연구소·산학협력단*에 용역사업 안내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2~'25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되었음 * 총 130개 기관(학회 20, 법학연구소 33, 산학협력단 77) – 아울러 다양한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26년부터는 입찰공고* 전에도 추가적으로 안내(3. 16.)를 실시하는 등 기관 참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6년 정책연구용역 제한경쟁입찰 나라장터 공고기간: '26.3.17.~4.14.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 지하 3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이설공사를 위하여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별관 지하 3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대 중 1대를 본관 지하 1층으로 이설하고 추가로 4대의 완속충전기를 본관 지하 1층에 신규로 설치하였음 – 이에 따라 예산 편성 시 목적에 따라 이설 되었어야 할 급속충전기 1대는 여전히 별관 지하 3층에 위치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확정된 예산을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직원 및 방문객의 전기차 운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공용차량도 점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이 적은 급속충전기 1대를 이설하는 대신 완속충전기 1대를 이설하고 4대를 신규 설치함 ○ '26년 예산에 급속충전기 1대 이설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목적에 맞게 엄격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불용액(불용률) 현황 (2022년)150만원(41.6%) (2023년)60만원(16.7%) (2024년)180만원(50.0%) – 또한, 전체 31건의 국외통신원 위촉 건수 중 신규 위촉은 6건(19%)에 그치고, 대부분 3년 이상의 기존 국외통신원을 재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13기(2024.9.~2025.9.) 국외통신원의 경우 2명 지원에 2명이 신규 위촉됨에 따라 지원자가 전원 위촉(경쟁률 1:1)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외통신원의 지원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양질의 국외통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 국외통신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5년부터 기본보고서 외에 헌법 및 주요 제도 등의 개정·변경사항에 관한 수시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통신원 제도의 활용도를 높임 *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기본법 및 연방헌재법 개정 ('25.3.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71호) ○ 또한, 국외통신원은 1년 단위로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선발과정에서의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하여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헌법재판연구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홍보 메일 발송('25. 하반기 발송, 24,779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해외연수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따른 해외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연수목적에 따른 제도 설명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연수 내용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음 - 또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의 경우 기한 내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수 비용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해외연수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은 임명된지 10년이 지나 연임된 헌법연구관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있어 해당 사업이 그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연수보고서에 대한 내규를 보완할 것	제도개선	○ '26년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자 선발 시부터 국제회의 참석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한 실무 사례 연구 등을 연수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도과 시 연수 소요 경비 일부를 환수하도록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를 개정함으로써, 보고서 제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함
○ [지적사항] 2024년 헌법재판소의 발간물 현황을 보면, 특정 두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며 전체 계약금액의 60.94%에 해당하는 2억 1,269만원을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한경쟁입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발간물 계약에 있어 관례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편중을 완화할 것	제도개선	○ 기존에 특정 두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와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을 각각 제한경쟁입찰과 특정 두 업체 외 타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관례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편중을 완화하였음 ○ 향후에도 수의계약 지양 및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함에도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함 - 2024년도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에 따른 불용액: 8억 1,300만원 - 2024년도 일반직공무원 휴직인원 총 26명 중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원: 23명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른 파견 등 「헌법재판소법」 및 「국가공무원법」 상 허용되는 대체 인력 충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	○ 우리 재판소는 결원 발생 시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른 대체 인력 충원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4년의 경우 휴직이 있었던 일반직공무원 총 26명 가운데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원 23명 중 20명을 대체인력 등을 통해 적시에 충원함 ○ 다만, 헌법연구관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운영하기 어려운바, 연 1회 정기채용 절차('25. 9~11월)를 통해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앞으로도 예상결원을 정확히 예측하고 반영하여 정기채용을 실시하는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세목조정을 통해 국외교육여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음 - 국외교육여비 부족 발생 사유는 매년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정책지도자과정(과장급 1명), 국립외교원의 글로벌리더십과정(국장급 1명) 등 교육훈련 파견에 소요되는 국외연수경비가 실소요보다 적게 예산에 반영됨에 기인함 - 국외교육여비는 타 비목에 비해 집행목적이 뚜렷하고 실제 소요가 비교적 명확히 예측이 가능한 점,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함 - 2024년 국외여비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 세목조정을 통하여 1,300만원을 증액하여 2,300만원을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국외교육여비의 연례적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제도개선	○ '25년에는 해당 예산을 증액 편성('24년 10백만원 → '25년 23백만원, 13백만원 증)하여 별도의 세목조정 없이 집행하였음 ○ 향후에도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국외교육여비의 연례적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주의하겠음

■ 2023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2024년 6월 말 기준 헌법연구관 78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출신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법조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함 - 헌법재판은 단순히 법률 해석을 넘어 정치·경제·사회학 등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재판이므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지식과 배경을 가진 헌법연구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비법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개선책, 유인책을 마련하고 채용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요건의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학회 등 광고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 채용 시에도 헌법학회, 공법학회 등을 통해 채용 홍보를 추진), 법학 외 전공자를 다수 채용함으로써 연구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는 헌법연구관 지원자 중 다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경쟁력 있는 비법조인 출신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비법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급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 운용할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 되는 장점이 있음. 또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DB형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퇴직급여가 많게 됨 -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미운용시 적립된 부담금만을 퇴직급여로 받게 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평균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공무직근로자의 후생증대 차원에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재직 공무직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해당 유형의 퇴직연금규약을 신고 완료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은 수행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며,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동 용역 계약의 주된 과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를 ‘사무용품 구입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으로 무선충전 탁상시계 730개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초청인원 393명, 참석인원 173명에 대비하여 현저히 많은 수량임 – 일반적으로 기념품은 넉넉하게 제작하는 경향이 있으나, 초청인원 수의 2배 가까이 되는 기념품을 제작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념식 등 행사 계획 및 진행 시 기념품을 과다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에 대한 주의 사항을 유념하고 행사의 취지, 행사인원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창립 기념식 등의 행사에 있어 기념품 과다 제작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향후 재판소 기념식 등의 예산 반영에 있어서 면밀한 행사계획을 통해 적절한 기념품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최근 4년 집행률을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약 10%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특근매식비(210-05),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직책수행경비(250-02) 세목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4개 비목의 불용액 합계가 3,300만원으로 기본경비 전체 불용액 4,500만원의 약 73%에 이르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예산을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실소요를 기반으로 해당 예산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세 목</th><th>'23년 예산액</th><th>'23년 집행액</th><th>'24년 예산액</th><th>증 감</th></tr><tr><td>특근매 식비</td><td>9</td><td>3</td><td>7</td><td>△2</td></tr><tr><td>임차료</td><td>25</td><td>17</td><td>17</td><td>△8</td></tr><tr><td>유류비</td><td>11</td><td>4</td><td>9</td><td>△2</td></tr><tr><td>직책수행경비</td><td>83</td><td>71</td><td>79</td><td>△4</td></tr></table> ○ 2025년도 예산안에 유류비 및 공공요금 및제세 등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실집행액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세 목	'23년 예산액	'23년 집행액	'24년 예산액	증 감	특근매 식비	9	3	7	△2	임차료	25	17	17	△8	유류비	11	4	9	△2	직책수행경비	83	71	79	△4
세 목	'23년 예산액	'23년 집행액	'24년 예산액	증 감																							
특근매 식비	9	3	7	△2																							
임차료	25	17	17	△8																							
유류비	11	4	9	△2																							
직책수행경비	83	71	79	△4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 내규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지만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만 개최하였을 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동 내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시기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활용상황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	제도개선	○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2024년 정책연구용역 결과 심의 및 정책연구용역 활용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24. 11. 22. ~ 11. 28.)하였음 － 심의결과 '적정' ○ (활용상황 점검 관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활용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설 내규안 · 제14조(연구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도에 체결한 총 18건의 발간물 수의계약 중 14건 (77.8%)을 한 업체와 체결하였고,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용역을 두 차례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할 발간 계약을 분할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시정	○ 2024년도 교육책자 및 연구보고서 발간 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역량 있는 신생업체들을 발굴하여 분산 계약함 – 전체 발간물(30건) 중 A업체(13건, 43.3%), B업체(10건, 33.3%), C업체(7건, 23.3%)로 다변화 노력하였음 ○ 2025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시 공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반영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기술평가 등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인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에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동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아니하여 8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그 운영을 개시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향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 사전에 구축·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제도개선	○ '24. 7. 12. AACC 및 정부 유관기관 홈페이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운영을 개시하였음 ○ 향후 홈페이지 구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전에 국제정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23년도 기준 전자접수율 51.3%, 전자송달율 39.2%)에 머물고 있음 – 법원이 제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자접수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접수·전자송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 재판 접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헌법 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의 활용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전자접수·전자송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헌법소원 전자접수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였고, 법조인과 민원담당자 대상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자헌법 재판센터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음 – 전자접수율·전자송달률은 과거 대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자접수율: ('17년) 33% → ('24년) 46% - 전자송달률: ('17년) 33% → ('24년) 39% ○ 또한, 전자헌법재판센터활성화를 위해 '24년도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다양해진 헌법소원 사건에 대응하고 연간 2,500건이 넘는 헌법재판 접수건수 처리를 위하여 헌법연구관 채용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헌법재판의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2023년 기준 46.6건임 - 인건비 불용액은 퇴직·휴직 및 신규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므로 채용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있어 채용시기를 다양화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직 방지 및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업무공백 최소화 및 이직 방지를 위해 헌법연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 2025년도에는 법관·검사의 재판수당·수사 지도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심판수당을 인상하였음 ○ 매년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헌법연구관 2명을 증원하였음 ○ 다만, 헌법연구관 채용시기 다양화는 채용 지원자의 예측성 보장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바, - 헌법연구관들의 휴직, 퇴직 예정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본안심리에서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년 3개월로 법정 처리기간을 4배 이상 초과함 - 해당 연도 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미제 헌법재판의 수도 2023년 말 기준 1,6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10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함 (2014년 824건 → 2023년 1,604건)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 조직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헌법재판 청구 남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전자접수를 통한 무분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9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였음 ○ 더불어 '24년 2월부터 연구부에 사전심사부를 신설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균질성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남소 방지 및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바, 추후에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분할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중견기업의 제품을 우회하여 구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법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것	제도개선	○ 향후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 의무 준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유념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사무용가구 교체사업 시 면밀한 구매 계획 수립으로 필수 교체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무용 가구 구매를 지양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2022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인건비 예산의 불용률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고, 2022년에는 불용률이 낮아졌으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주의	○ 2023년도 인건비 집행률을 면밀히 관리하여 2022년에 이어 불용률이 감소하였음 (2022년 4.6% → 2023년 2.7%) ○ 향후에도 면밀한 소요 예측과 검토를 통한 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 불용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사건 접수 건수 증가 등에 대응해서 헌법심판사건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임 - 2022년 헌법재판의 처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67명(법원, 검찰청 파견 인원 13명 포함)이 4,347건을 처리 - 헌법연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건수는 2022년 38.8건으로 2018년 40.8건과 비교해서 줄었고,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732.6일로 2018년 569.1일과 비교해서 증가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등의 증가로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동 업무의 수행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연구관 정원의 적정 수준에 대해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사실관계 확인 업무 관련)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수적인 바, 헌법연구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합적인 수행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18. 6월 개정) 및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21. 12월 제정)를 제·개정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헌법연구관 정원 적정 수준 관련) 충실하고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기재부와 헌법연구관 증원 협의를 통해 총 3명을 증원하였음 - 향후에도 기재부와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헌법연구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연구관 정원은 69명이나 현원은 59명으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2018년 이후 헌법연구관 정원은 확대되었으나 헌법연구관의 현원은 정원 대비 7~10명이 미달함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명이 신규임용된 반면 퇴직자도 9명에 달하고 있으며, 퇴직자 중에는 헌법연구관의 임기 10년을 충족하지 않고 5년, 6년, 7년 근무 뒤에 퇴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배치된 헌법연구관 등에 헌법재판 사건의 업무 분담 또는 탄력근무제 실시 등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연구관의 조기 퇴직 사유와 근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헌법연구관의 장기재직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 도개선	○ 충실한 심판사건 연구업무를 위한 헌법연구관의 현원 확보 및 결원과 연평균 휴직신청 인원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 헌법연구관 채용 시험을 거쳐 총 10명의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2024년에 순차적으로 헌법연구관(보)으로 임용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헌법연구관의 장기근속 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헌법연구관의 현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재까지의 직책수행 경비 지급 추이를 살펴볼 때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밀하게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직책수행경비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직제 개편 또는 증원에 따른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반영하고, 직책수행경비와 관련된 연계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 도개선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실소요를 감안하여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음 * ('23예산)1,274,496천원 → ('24예산)1,269,696천원 ○ 향후에도 직책수행경비 예산 편성 시, 증원 및 휴직 소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직책수행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제헌절, 헌법재판소 창립일, 법률신문 창간 기념일에 맞춰 연 3회 법률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그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다짐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함 - 지하철캠페인과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의 국선 대리인 제도나 전자헌법재판센터와 같은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시설 및 행사를 소개하는 등 법률신문 독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신문 광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3. 8. 31. 지면광고부터 상징적인 광고 문구를 지양하고 전자헌법재판센터, 국선 대리인 제도 등 수요자 친화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재판소 정원은 343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를 때, 1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현행 산정방식에 따를 때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상황으로, 기준에 2명이 미달하여 의무고용을 미달성한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	제도개선	○ '23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인 공무원을 신규 채용('23. 8. 29.)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비율을 달성하였음 (13명, 3.6%)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2022년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임차차량은 한시기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차량 임차시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권익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장 관용차를 수의계약으로 임차함 ○ 헌법재판소가 승용의 대형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최단운행연한인 8년에 미달하므로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임대차량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임대기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해당 계약은 추정가격이 1억 이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건으로 재공고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의2, 「조달청고시」내용연수의 최단운행연한(8년)은 구매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임차차량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헌법재판소는 임차차량에 대해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의 기관특성, 예산 상황, 용도,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임차 계약기간을 최대범위(5년)로 설정하는 등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국가계약법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규모에 따라 공정한 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동일인이 다수청구, 반복청구한 사례가 전체 헌법재판 청구 사건의 약 1/3 (31.1%, 23,939건 중 7,456건)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을 어렵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동일인의 다수 청구, 반복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전자접수를 통한 무분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9월 전자 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였음 ○ 아울러, 남용 방지 및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바, 추후에도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필요 시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최근 10년(2013년~2022년) 동안 헌법재판의 접수 건수는 2013년 1,480건에서 2022년 2,829건으로 1,349건이 증가함 –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은 2013년 982건에서 2022년 2,322건으로 1,340건으로 증가했고, 헌마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은 2013년 748건에서 2022년 1,915건으로 1,167건 증가함(2023년 6월말 기준) ○ 헌법소원심판의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향후 사전에 소송 요건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민원실 상담 안내, 지능형 민원상담(챗봇)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민원 상담 과정에서 청구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요건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양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음 – 다만,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청구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안내하는 것은 심판청구 접수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청구인이 청구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고 민원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직원의 직급과 과정에 따라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해당 과정을 미수료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지원한 수업료를 수강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2022년 전화외국어 수강인원 158명 중 국장급 이상 직원 2명, 3~5급 직원 중 9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전화외국어 과정을 미수료한 직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원한 금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1분기 전화외국어 과정부터 미수료한 직원에 대해 지원한 수업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을 여학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가 있고, 해당 연구에 지출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AACC 및 연구사무국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2021년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방안’ 그리고 2022년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심판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가 실시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연구결과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개선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행여부 및 진척도 등을 점검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실시 후 해당 부서에 용역 결과물을 전달하여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이 산출되면 관련 부서로부터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용역 결과 활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또한, 필요한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의 처리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건이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법률상 주요 기능은 헌법 재판 연구이고, 조직에는 제도연구팀, 기본권 연구팀 등이 있으므로, 처리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건 해결을 위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법정 상한인 40명에 미달하는 38명이고 현원이 33명이고, 헌법 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예산 가운데 헌법재판 연구활동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운영 지원 예산 18억 5,800만원 중 비중이 적은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이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기능과 인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헌법 재판소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확대되어야 할 성과·사례를 국회 등에 설명하는 노력 필요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사건의 처리 등에 헌법재판연구원 인력의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연구원은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의 헌법재판 관련성 제고와 연구원의 기능 및 인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연구과제의 헌법재판 관련성 제고) 연구 업무 내규를 변경하여 연구과제 선정 시에 헌법재판 실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 전 재판부와 연구부로부터 연구과제 제안 목록을 접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세계헌법재판 조사보고서 국회 배부) 매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과제 발간보고서를 국회 관련 부서(의장실, 법사위 위원실, 위원회, 국회도서관 등)에 송부하여 연구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LLM 과정이 아닌 헌법연구관에게 지급 기준액 보다 5,68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달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기 때문임 - 당시 헌법재판소는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학자금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를 전용하여 체재비를 지급하였는데, 체재비 추가 지급액은 규정에 따른 것이나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지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 등 추가 지급액 소요를 입증할 자료를 근거로 추가 지급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	○ 2025년도 해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등 집행 소요 자료를 근거로 체재비 추가 지급액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지적사항] 재판자료확충의 내역사업 중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 공보 등 발간사업의 2022년 예산 1억 3,900만원 중 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73.3%), 발간비 예산 1억 1,100만원 중 8,400만원(집행률 75.7%)이 집행됨 ○ 헌법재판소는 책자 발간 외에도 홈페이지에 발간물과 동일한 내용의 PDF 파일을 게재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발간물 자료를 배포중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발간물의 온라인 배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희망하는 기관에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배부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소요에 맞게 헌법재판소 책자 발간 예산을 조정할 것	제도개선	○ 현재 판례집, 공보, 영문판례집, 판례요지집, 결정해설집 등 홈페이지에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중 - '23년도 발간물 외부 홈페이지 게시 완료(12월) ○ 발간수량의 경우, '19년 발간물 배부기관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소요에 맞게 발간수량을 대폭 감축*(△4,750부, △34%)하였으며, * ('19년) 14,050부 → ('23년) 9,300부 ○ 발간예산 또한, '18년 이후 매년 동예산을 감액조정(△88백만원, △41%)하였음 * ('18년) 214백만원 → ('23년) 126백만원 ○ 앞으로도 수시 수요조사를 통한 발간물 수요를 파악하여 발간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를 정부 구매카드로 집행하는 부분의 카드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디브레인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회씩 일괄하여 지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함 - 업무추진비 개별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증빙의무가 있는 사용건인지, 사용 제한업종 및 시간대에 집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결산심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급처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사용의 목적과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비 예산 지급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재 시 요구조건에 맞추어 세부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제도개선	○ '22년도 집행내역의 경우 디브레인 시스템 상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사용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 모든 집행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작하기 힘든 상황인 바, 1분기 분량의 자료를 수작업하여 요청 의원실에 제출하였으며, '22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 받은 바 있음 ○ 또한 '23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예산 지급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재 시 요구조건에 맞추어 업무추진비 카드승인 내역을 건별로 처리하여 세부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간행물의 발간분량이 적게 나타남에 따라 각종 발간물의 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 － 헌법재판소 발간물 간행 관련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 1억 8,900만원 중 1억 5,100만원만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 － 간행물 발간비의 집행부진 문제는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음 － 발간비 및 원고료의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예산 계상 시 발간물의 권당 면수와 원고료 지급 대상 원고의 종류 및 분량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기 때문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과거 연도 간행물 발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여 발간 비용의 과다 산정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불용액 감소를 위해 '18년 이후 매년 발간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18년 214백만원 → '23년 126백만원)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동 사업예산 집행률 또한, '22년 73%에서 '23년 92%로 19% 증가함 ○ 다만, 발간물의 특성 상 발간예산 편성 시 원고 분량, 배부수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 향후에도 발간예산의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심판사건 처리 기간은 180일 이내이지만, 심판사건 처리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사건 수가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함 ○ 2017년에 접수되었으나 2023년 7월말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21건 있음 －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헌법연구관의 인력 확충 등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등 심판사건의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접수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국 결정이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심리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장기미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무경력이 많은 연구관들로 구성된 장기미제부를 한시적으로 신설('23. 2. 12.) · 운영 하고 있음 ○ 향후에도 사건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정비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임 ○ 다만, 헌법재판은 대세효가 있어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 재판판례 및 입법례 조사, 국내외의 연구 자료 수집 · 분석, 관련기관의 의견 취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바,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비 중 청사 임차료 비중이 81.5%로서 2020년 비중 79.7%보다 상승함 －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임차료 177억 7,600만원 지출했으며, 2024년부터 계약만료시점인 2047년까지 24년간 추가로 357억 1,200만원의 예산의 추가 지출 예상됨 ○ 임차료 예산의 과다 지출은 헌법재판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에 영향을 주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임차료 절감을 위해 청사 이전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청사 수급 계획 마련과 함께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 임차료 절감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연구원은 청사 임차료 과다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이전 및 단기적인 임차료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장기대책: 청사 수급계획 마련) 청사 임차료의 절감 및 안정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통합청사 입주(29년 예상, 관련계획 국회심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료 과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단기대책: 효율적인 청사공간 활용) 청사 임차료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시설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청사이전 전이라도 교육과정 신설(3개 과정 중)하고 대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연구원 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임차료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사건에서 사선대리인이 대리한 사건의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이 대리한 사건의 인용률보다 높음 －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은 2018년 국선대리인 10.2%, 사선대리인 29.0%로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이 3배 정도 높았고, 2020년도는 국선대리인 11.2%, 사선대리인 15.2%로 역시 사선대리인이 4%포인트 높았으며, 2022년도는 국선대리인 9.1%, 사선대리인 17.1%로 사선대리인이 8%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사선대리인의 인용률보다 낮은 원인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경우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최근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비해 인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2010년 이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보다 높았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 경력 및 전문분야, 과거 국선대리활동에 대한 평가를 적극 고려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이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심판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보수 현실화 검토, 초청연수 실시, 모범국선대리인 포상 및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15	합계	2,683	824	1,859	1,937	47	15			48	176	203	1,421	1	26	746
	위헌법률	87	50	37	44	21	1				20		2			43
	정당해산	1		1												1
	권한쟁의	11	3	8	2					1			1			9
15	헌법소원	계	2,584	771	1,813	1,891	26	14		47	156	203	1,418	1	26	693
	§68①	1,765	440	1,325	1,375	6	10		47		203	1,090	1	18	390	
	§68②	819	331	488	516	20	4			156		328		8	303	
2016	합계	2,697	746	1,951	1,976	33	9	1		58	179	214	1,418	3	61	721
	위헌법률	63	43	20	27	12	2				4		5		4	36
	탄핵	1		1												1
	정당해산	1	1		1								1			
	권한쟁의	18	9	9	5								3		2	13
	헌법소원	계	2,614	693	1,921	1,943	21	7	1	58	175	214	1,409	3	55	671
	§68①	1,769	390	1,379	1,373	17	2	1	58		214	1,050	2	29	396	
§68②	845	303	542	570	4	5			175		359	1	26	275		
2017	합계	3,347	721	2,626	2,425	4	1			38	116	177	2,064		25	922
	위헌법률	71	36	35	11	1					10					60
	탄핵	1	1		1					1						
	권한쟁의	15	13	2	2								2			13
	헌법소원	계	3,260	671	2,589	2,411	3	1		37	106	177	2,062		25	849
	§68①	2,383	396	1,987	1,873	1	1		37		177	1,633		24	510	
	§68②	877	275	602	538	2				106		429		1	339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18	합계	3,349	922	2,427	2,447	57	59			52	108	271	1,850		50	902
	위헌법률 권한쟁의	77	60	17	39	8	18				10		3			38
		15	13	2	5								2		3	10
	헌 법 소 원	3,257	849	2,408	2,403	49	41			52	98	271	1,845		47	854
	§68①	2,329	510	1,819	1,824	5	10			52		271	1,441		45	505
	§68②	928	339	589	579	44	31				98		404		2	349
2019	합계	3,632	902	2,730	2,519	8	7			34	142	206	2,076		46	1,113
	위헌법률 권한쟁의	69	38	31	18	5	1				11		1			51
		16	10	6	5					2		2	1			11
	헌 법 소 원	3,547	854	2,693	2,496	3	6			32	131	204	2,074		46	1,051
	§68①	2,567	505	2,062	1,946	3	4			32		204	1,663		40	621
	§68②	980	349	631	550		2				131		411		6	430
2020	합계	4,354	1,113	3,241	3,042	10	7			64	162	230	2,515		54	1,312
	위헌법률 권한쟁의	71	51	20	20	7	4				8				1	51
		16	11	5	11							5	6			5
	헌 법 소 원	4,267	1,051	3,216	3,011	3	3			64	154	225	2,509		53	1,256
	§68①	3,093	621	2,472	2,283	1	2			64		225	1,946		45	810
	§68②	1,174	430	744	728	2	1				154		563		8	446
2021	합계	4,139	1,312	2,827	2,621	15	4			46	126	217	2,161		52	1,518
	위헌법률 탄핵	89	51	38	19	6	2				9		2			70
		1		1	1								1			
	권한쟁의	7	5	2	1							1				6
	헌 법 소 원	4,042	1,256	2,786	2,600	9	2			46	117	216	2,158		52	1,442
	§68①	3,011	810	2,201	2,105	6	1			46		216	1,791		45	906
	§68②	1,031	446	585	495	3	1				117		367		7	536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22	합계	4,347	1,518	2,829	2,675	26	30			30	113	196	2,241		39	1,672
	위헌법률	113	70	43	37	17	8				7		2		3	76
	권한쟁의	11	6	5	4					1		1	2			7
	헌 계	4,223	1,442	2,781	2,634	9	22			29	106	195	2,237		36	1,589
	§68①	3,228	906	2,322	2,208	5	11			29	1	195	1,935		32	1,020
	§68②	995	536	459	426	4	11				105		302		4	569
2023	합계	4,263	1,672	2,591	2,659	38	14			50	220	253	2,042		42	1,604
	위헌법률	101	76	25	48	25	7				11		2		3	53
	탄핵	4		4	1							1				3
	권한쟁의	17	7	10	8					2		2	4			9
	헌 계	4,141	1,589	2,552	2,602	13	7			48	209	250	2,036		39	1,539
	§68①	2,955	1,020	1,935	1,999	3	5			48	6	250	1,659		28	956
2024	§68②	1,186	569	617	603	10	2				203		377		11	583
	합계	4,126	1,604	2,522	2,725	47	15			44	217	339	2,021	2	40	1,401
	위헌법률	71	53	18	28	14	5				7		2			43
2025	탄핵	12	3	9	2							2				10
	권한쟁의															
	헌 계	18	9	9	3					1			1	1		15
2026	§68①	4,025	1,539	2,486	2,692	33	10			43	210	337	2,018	1	40	1,333
	§68②	2,744	956	1,788	1,925	5	4			43	9	337	1,497		30	819
	합계	4,493	1,401	3,092	3,111		3			39	146	310	2,581	3	29	1,382
2027	위헌법률	63	43	20	17		1				15				1	46
	탄핵	10	10		10					2		8				
	권한쟁의	21	15	6	11					2			5		4	10
2028	헌 계	4,399	1,333	3,066	3,073		2			35	131	302	2,576	3	24	1,326
	§68①	3,264	819	2,445	2,486		2			35		302	2,124	2	21	778
	§68②	1,135	514	621	587						131		452	1	3	548

자료: 헌법재판소